

현안분석 2015-05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김명아

현안분석 2015-05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김 명 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upport Measures for
Korea-China Industrial Parks and Complexes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Kim, Myoung-Ah

2015. 11. 2.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2015년 10월 31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을 확인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FTA에서는 경제협력 챕터를 마련하여 지방경제협력과 한중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협력 내용을 정해두고 있음
-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에서는 개발 및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단독 지정됨
-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과 함께 발표된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3월 19일 개최된 제 7 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관련 부처들은 후속조치를 마련 중임

-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내에 설치되는 한중FTA산업단지는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임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글로벌경협특구에 적용될 규제 최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의 과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에, 한중FTA에 따른 한-중 산업단지 조성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산업부-중국 상무부 간 개설 예정인 ‘산업단지 협력 관련 차관급 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임
- 한중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위하여서는 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에 따라 조성되는 한중산업단지가 국내법적으로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II. 주요 내용

- 2015년 6월 22일 한중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가 단독으로 결정됨
- 한중 FTA 협정문 제17장 제26조에서는 양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한중산업 단지 한 곳이며, 국내법적으로는 새만금지역에 위치하므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규정이 중복 적용되며, 한중산업단지가 지정된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개발에서의 다양한 조직 및 권한, 이행체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제17.26조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의 명칭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내법적 입법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그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등 유사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조성방안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함
- 국내의 각 특구 및 산업단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자원에서 지역 간 연계와 특성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새만금이 가진 입지조건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새만금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안 실행 노력 외에도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하므로, 한중/중한 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 시 중국의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협력 수행에 기초가 됨
 - 중국의 중한 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중한 산업단지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측 요청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다른 규제완화지역(특구 등)의 운용 정책과 중한 산업단지 추진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유사 정책 수용 방안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하여서는 한중FTA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를 협의채널과 연합협력이사회, 양자간 업무위원회,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관리주체와 개발주체를 분리하여 추진력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발기금을 설립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운영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관협력기금을 설치하여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생산/물류/연구/관광레저/주거 환경을 모두 갖춘 종합산업단지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수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중FTA 제17.3조는 경제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0장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한중산단 개발 및 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전문 분쟁해결 기관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인증·검역 표준화, Cold Chain 구축, 원스탑 통관, 창구단일화,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건설, 해외전자결제 수행 등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하고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한중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만금이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류·유통업, 고부가식품산업, 관광·레저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성공모델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제어 : 한중FTA,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 전문 분쟁해결기관, 시범사업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oth Korea and China verified that the Korea-China FTA, signed at June 1st, 2015, will be the link between the Eurasian initiative and One Belt and One Road, drawing a attention to specif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future.
- Korea-China FTA can be evaluated as future-oriented one because of the scheduled follow-up negotiations on the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 It is expected to determine direction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rough which various cooperations projects such as the operation of provincial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area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 The details on specifying the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and oper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 are stipulated in article 17.26 of chapter 17 in Korea-China FTA Agreement and government of Korea designated Saemangeum as the Industrial Complexes between two countries.

-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es planned to be installed in the area of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es are expected to be built as a special regulation Area on the basis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stipulated in Chapter 17.
- The same mechanism with Saemangeum Global Industrial Complexes such as minimal regulation, simplifying customs procedures, installment of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both nations, will be applied to the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 Thus,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re needed.
-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s aim to suggest basic orientation for the future institutional policy support measures, analyzing legal status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in terms of domestic law and comparing it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I. Main Contents

- June 22 2015, Korea-China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es are determined solely as a promoted area of the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es.
- It is stipulated at Article 26, Korea-China FTA Chapter 17, that both nations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in establishment,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designa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re the only designated industrial parks currently and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pecial Act on Promotion of the Saemangeum Project』.
-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legal status, implementation and the legal rights in terms of establishment / operating / development of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through the Special Law's amendment and a separate legislation.
- The clarification of legal status and basis for the name and scope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defined in Article 17.26, will be needed through specific domestic legislation and legal policy implementation.
-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tinued to promote activation measures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similar policies and acts such as free economic zones and foreign investment zones.
- Each special economic zone and industrial parks in domestic area are lack i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thus, lots of efforts should be made to organize inter-linked regional characterization on the scale of national strategy.
- Since the experience of China regarding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its operations is rich, it is necessary to find out China's relevant policies in the process, making the drive being carried out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 For the effective composition and implementation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it is desirable to embrace China'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Korea-China FTA actively, through which management and operating system should be built and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be established.
- It is recommended for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operating system to be run separately; a consultation channels, Union Co-operation Council, Bilateral Affairs Committee, which contributes to drive the process and development actively by dividing the entities into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actors.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by establishing a Development Fund for the financing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installing a var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und in addition to operating funds with a public character.
- According to Article 17.3, Korea-China FTA, with respect to economic cooper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rticle 20 will not be applied, so that it is an alternative way to introduce a specialized dispute resolution related with dispute i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 It is meaningful to derive the success model by providing an innovative regulatory exempti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and performing a pilot project for such as logistics, distribution, value-added food industry tourism and leisure to maximize the advantageous position of Saemangeum.

III. Expectation

-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and relevant policies of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es, its experience will be used as a basis to support policy and institutional provision for the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the next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Key Words** : Korea-China FTA, the Korea-Chin Industrial Complexes/Parks, Minimal Regulation,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Operating System, Dispute Settlement System, Pilot Projects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의 목적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25
제 1 절 한중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관련 법제	25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 현황	25
2.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30
제 2 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2
1. ‘한중산업단지’와 국내 산업단지의 개념	32
2.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법적 과제	36
제 3 절 새만금특별법 및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42
1. 새만금 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정책	42
2.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주요내용	43
3.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현황	47
4.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현황	50

제 4 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54
1. 국내의 경제특구와 근거 법제	55
2. 한중산업단지와 다른 경제특구 간 비교	60
제 3 장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관련정책	67
제 1 절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	67
제 2 절 관련 정책	68
제 3 절 중국의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사례	71
1. 중국-싱가포르 쭈저우공업원구 협력 사례	71
2.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산업원구 협력 사례	74
3. 다른 형태의 경험·개방 지역	76
제 4 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83
제 1 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83
제 2 절 관리 및 운영	88
1. 관리 및 운영 체계	89
2. 관리주체와 개발주체의 분리와 기금 운영	90
제 3 절 관련 정책 지원	92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범위	92
2. 출입국관리제도 지원	93
3. 한중산업단지 전담 분쟁해결기관 설치	94
4. 유통채널 확보 및 물류 원활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	96

제 4 절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 개발	102
1. 개방수준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의 필요성	102
2. 식품·바이오 산업 물류기지 조성	106
3. 한중산업단지 관광·서비스 특화지구 조성	107
제 5 장 결 론	111
참 고 문 헌	1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15년 10월 31일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으며,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중FTA는 이후의 후속협상 과정에서 양국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 운영과 한중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 방향을 정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과 함께 발표된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 또한, 2015년 3월 19일 개최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관련 부처들은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에서는 한중산업단지로 단독 선정되면서 새만금 글로벌경협특구에 적용될 규제최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의 과제가 한중산업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산업부-중국 상무부 간 한중FTA 협정문 제 17.26조(한중산업단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

1)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한중관계 연구』 제1권2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2015., 84면.

2)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2. 26., 10-11면.

는 가운데, 이에 앞서 구체화된 한중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 및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중FTA에 따른 한-중 산업단지 조성 및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시사점과 제도적 지원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중FTA에 근거한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기로 한다. 즉, 한중FTA에 따라 조성되는 한중산업단지가 국내법적으로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법제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립하기로 한다. 또한, 한중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중국측에서 조성하는 중한산업단지와 상호호혜적으로 조성되고 개발되어야 하므로 중국의 경험과 관련 정책을 함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한중/중한 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제도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각종 법제 및 제도상의 지원 정책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 1 장에서 서론을, 제 2 장에서는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및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 3 장에서는 중국

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관련 정책 및 경험을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제 4 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시사점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에 대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향후 한중 산업단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만, 각 주제별 규제완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도출은 별도의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각 분야 전문가를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3차례의 중간 Review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법제연구의 성과를 담보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법령분석과 실태조사, 사례조사, 전문가인터뷰, 문헌 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제 1 절 한중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관련 법제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 현황

2013년 12월에 개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인식된 양국 정부간 경제협단지 공동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새만금 한중경제협단지 추진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³⁾

새만금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최소화와 통관절차간소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왔다.⁴⁾ 새만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하여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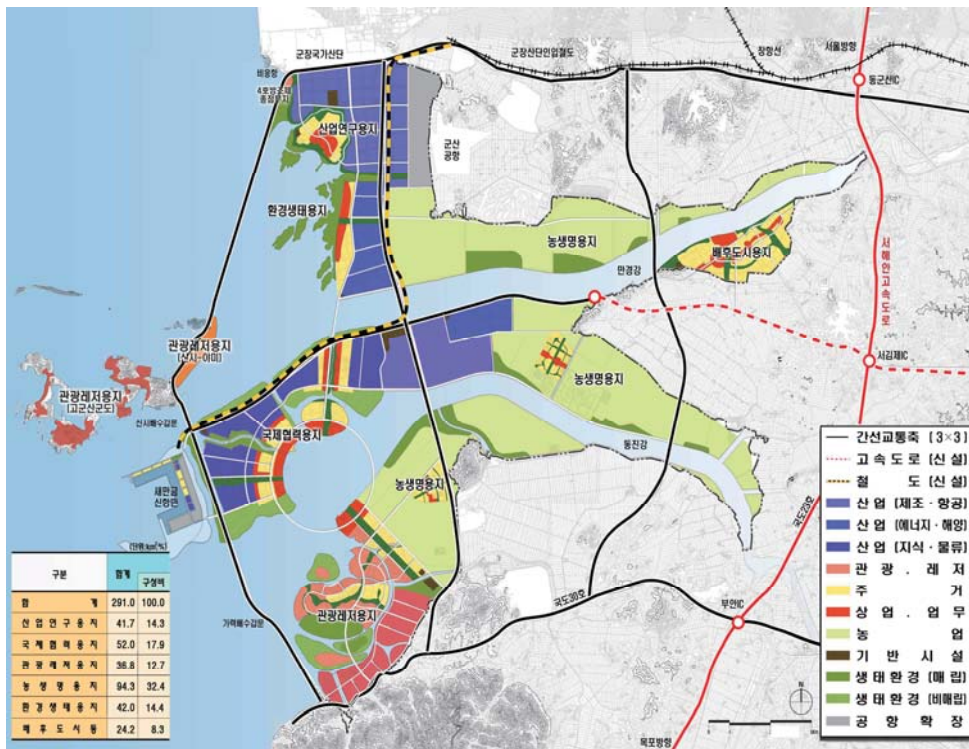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2월 25일 발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⁵⁾에서는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에 한중

-
- 3) 기획재정부, “『제15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14. 9. 5., 3면,
(https://www.kdi.re.kr/infor/ep_view.jsp?num=135400 2015.10.30.검색); 김정진, “새만금 한중FTA산업단지의 국내/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과의 정합성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20면 참조.
- 4) 김명아, ‘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 KIEP CSF 중국전문가포럼 - [이슈분석], 2015. 4. 30., 7면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3079> 2015. 10. 30. 최종 검색)
- 5)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방안’은 새만금에 서의 성과 여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 다른 특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만금을 이미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다른 특구와 연계하여 네트워크화함으로써 규제특례지역 핵심 선도지역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방안’은 8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고용, 출입국, 통관, 시험·인증, 금융, 입지, 개발, 환경)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8개 영역의 규제 특례지역 조성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물리적 접경지역을 설정하여야만 ‘국경내 규제특례지역’ 구상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의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시험인증 등 통관절차를 윈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수요자 주도 방식으로 개발·운영 예정에 있다.

[그림 1] 새만금기본계획 변경방안에 따른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안⁶⁾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새만금 경험단지조성은 새만금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성화된 입지로 구성하며, 국가간 경제협력특구로 추진된다. 그 중에서 북쪽(군산시 인접)에 자리한 산업연구거점(산업+연구)에서는 첨단산업유치 R&D공동연구단지 및 식품가공단지조성을,

정책적 활용전략’, KIEP CSF 중국전문가포럼 - [이슈분석], 2015. 4. 30., 7면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3824> 2015. 10. 30. 최종 검색)).
 6) 2014년 9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개발 도약의 기틀 마련”’ 보도자료, 2015. 9. 25., 12면)의 그림을 인용.

중앙에 자리한 국제협력거점(경제협력+공동과제)에서는 FTA네트워크 활용 국가별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남쪽(부안군 인접)은 관광레저거점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관광자본을 유치하여 관광협력거점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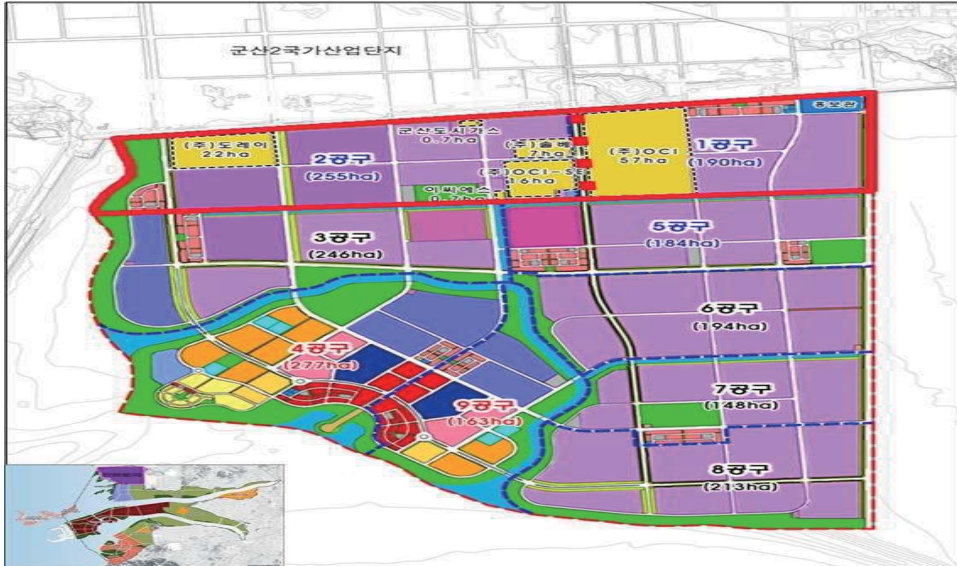
[그림 2] 새만금기본계획 상의 거점별 경협단지조성⁸⁾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현재 군산2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산업연구용지 중에서 1공구와 2공구, 현재 매립 중에 있는 5공구를 포함하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⁹⁾

7)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 [새만금 기본 계획] - [경협단지조성] - [권역별 개발방향] (<http://www.saemangeum.go.kr/sda/sub/marster/SMB81001.do> 2015년 10월 26일 최종 검색).
 8)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 [새만금 기본 계획] - [경협단지조성] - [권역별 개발방향]에 소개된 그림 인용 (<http://www.saemangeum.go.kr/sda/sub/marster/SMB81001.do> 2015년 10월 26일 최종 검색).
 9) 군산2국가산업단지(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인접)에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타타대우상용차, GM대우, 세아제강 등 대기업 입주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6면).

[그림 3] 새만금 산업용지 개발계획 상의 한중산업단지 위치¹⁰⁾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투자유치업종은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대규모 토지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한중산업단지 중점 유치 업종¹¹⁾

유치 대상 업종	상세 내용
첨단소재	나노소재, 융합소재 등 신시장 개척이 용이한 분야
부품업	고품질 기계 품목, 자동차부품중 카본섬유 소재업체 등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직계열화 품목, 에너지 저장장치 등

1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6면 그림 인용.

1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5면의 내용을 표로 작성.

유치 대상 업종	상세 내용
관광·레저	자연풍경과 연계한 해양스포츠, 복합레저, 휴양, 녹색체험 등 관광업종 유치
물류·유통업	산업·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물류·유통·전자상거래업
고부가 식품	원자재 수입 가공 후 제3국 수출단지 조성

따라서, 한중산업단지 추진과 시범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업종을 위주로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현황과 입주 예정기업은 다음 [표 2] 및 [표 3]와 같다.

[표 2] 한중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현황¹²⁾

기업명	위 치	면 적 (천㎡)	투자규모 (억원)	계약일	투자 시기 (예정)	부지 분양액 (억원)
OCI(주)	산단 1공구	571	22,000	‘13.3.27	‘15~	864
OCISE(주)	산단 2공구	162	10,000	‘13.9.11	‘13말~’16	340
도레이사	산단 2공구	215	3,000	‘14.1.9	‘14초~’18	무상 임대
솔베이사	산단 2공구	70	1,210	‘15.2	‘15~	105
이씨에스	산단 2공구	7	28	‘15.2	‘15~’17	10

OCI 등 기존 입주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히고 있는 유치업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 다른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6면의 표를 인용.

다만, CNPV 등 입주예정기업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으로서 한중산단 중점유치업종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향후 일관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한중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MOU 체결기업)¹³⁾

용지별	기업명	위 치	투자업종	면 적 (천㎡)	투자규모 (억원)	체결일	투자시기 (예정)
산업 용지	CNPV, GS파워	산단 옆, 연구용지	태양광 발전	2,310	5,800	'14.11.24	'15~
	CNPV	산단 1공구	태양광 부품제조	66	3,000	'15.6.10	'17

2.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2015년 6월 1일 한중 FTA가 서명되었으며,¹⁴⁾ 동 협정 제17장 26조에서는 ‘한중 산업단지의 설립, 운영, 개발에 대해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⁵⁾ 이에, 2015년 6월 22일 한중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가 단독으로 결정되었다.¹⁶⁾

한중FTA는 2015년 10월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6면의 표를 인용.

14)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한·중 FTA - 개요 - 일지 (<http://www.fta.go.kr/cn/info/2/> 2015. 10. 30. 검색)

15)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한·중 FTA - 협정문 및 기본문서 - 협정문 - 제17장 경제협력 (<http://www.fta.go.kr/cn/doc/1/> 2015. 10. 30. 검색)

16) 이데일리, “‘새만금’ 한중FTA 유일 산단 선정, 투자 유치 및 개발 가속화”, 2015. 7. 25.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21&newsid=010_88966609438128&DCD=A00402&OutLnkChk=Y 2015. 10. 30. 검색); 김정진, “새만금한중FTA산업단지의 국내/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과의 정합성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20면 참조.

한중FTA가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헌법 제6조와 제60조, 제73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한중FTA에 근거한 한중산업단지도 일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¹⁷⁾
제 6 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한중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지원방안 검토를 위하여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중산업단지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기초로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한 곳이며,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함께 받게 된다.

또한, 새만금의 경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¹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규

1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 10. 30. 최종 검색)

18)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의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6일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지구를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관광단지 구성하고 있다(http://www.feز.go.kr/kr/saemangeum-gunsan-fez-overview.jsp 참고. 2015. 8. 5. 최종 검색).

가 함께 적용된다.

한편, 국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추진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며, 그 소관부처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산업 모델을 추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각 유망산업별 법제 지원 및 정책적 지원도 뒷따라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필요한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한중산업단지’와 국내 산업단지의 개념

한중FTA 협정문¹⁹⁾ 제17장 제26조의 한중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한 설립 및 운영·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 공동개발의 산업협력 단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1. 양 당사국은 지식 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19)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타결] - [한-중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반하여 국내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중 계획입지의 대표적 유형으로서²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²¹⁾ 다음 [표 4]는 국내 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및 유형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4] 국내 산업단지의 법적 근거 및 유형²²⁾

유형	지정권자 ²³⁾	지정목적	대상지역
국가 산업 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 가목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기간산업·첨단산업 입지로 양호한 지역
일반 산업 단지	시/도지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 나목	시·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도시 첨단 산업 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 다목	첨단산업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FTA] - [협정문 보기] (<http://www.fta.go.kr/cn/doc/1/> 2015. 10. 30. 최종 검색)

20) 신기동 외,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해외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2009., 7면.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 가목에서 라목.

22) 박영철, “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2집 제2호, 2012. 8., 240면 재인용

23)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참고.

유형	지정권자 ²³⁾	지정목적	대상지역
농공 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군수/ 구청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 라목	시/군내에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

(1)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분야 접촉선

한중FTA 제17.27조는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협상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중산업단지의 설립, 운영,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중국과 진행하게 된다.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
<p style="text-align: center;">제17.27조 접촉선</p> <p>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7.22조의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을 제외하고, 그 밖의 협력 분야 관련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p> <p>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p> <p>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p>

(2) 한중산업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한중산업단지가 국내법상 산업단지의 지위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조성·개발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FTA 제17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협력에 대한 접촉선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로 한중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기 이전인 2010년 6월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산업용지에 대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²⁴⁾ 이에 2010년 7월 19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협의시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²⁵⁾

이러한 새만금 산업용지의 지위와 관리체계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이관되었으며,²⁶⁾ 현재 한중산업단지로 우선 지정된 1공구, 2공구, 5공구의 경우에는 산업용지에 조성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²⁷⁾
<p>“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p>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24)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 협의의견』, 2010.5.30.

25)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69호)』, 8면 (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notify/bbs/bbsView.do?bbs_seq_n=58386&bbs_cd_n=5 2015.10.30. 검색)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용도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조치) 내지 『새만금개발청 직제』 부칙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10.30. 최종 검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²⁷⁾
<p>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p>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p>*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p>

2.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법적 과제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은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법에 근거한 ‘산업단지’와 그 특성 및 범위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한-중 양국은 제17.26조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의 명칭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내법적 입법과 정책 수행을 통해 그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 필요성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경우 지정 구역 내에서 한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인프라구축 사업과 첨단소재, 부품업,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물류·유통업, 고부가 식품 등에 대한 첨단 과학기술산업을 위주로 연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등의 운영·개발에 대한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한중산업단지에는 교통, 전기, 통신을 비롯하여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물류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용지로서 6대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서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에 근거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중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새만금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협력을 통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5항²⁸⁾
<p>제 6 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p>

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 10. 30. 최종 검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5항
<p>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현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새만금 산업용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개발청장이지만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지게 된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용지 내지 한중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²⁹⁾
<p>제 5 장 산업단지의 관리</p> <p>제30조(관리권자 등)</p> <p>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 10. 30. 최종 검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한중FTA 제17.27조에 따라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운영에 대한 관리권한과 접촉선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새만금 글로벌경협특구 무규제화 정책 추진 측면에서 보면 관리권한 위임 방식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원적으로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양국 협력을 통한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 내지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지역 내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³⁰⁾ 이는 한중FTA 제17.26조가 규정하고 있는 한중산업단지의 추진 목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중FTA 제17.26조에서는 ‘양 당사국은 지식 공유,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동 협정에 기인하여 설립·추진되는 한중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지 공업원을 ‘설립·운영·개발’함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한중FTA 제17.26조 제1항). 이렇게 공동협력을 통하여 설립·운영·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중산업단지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산업 단지/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한중FTA조 제17.26 제2항)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설립·운영·개발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³¹⁾ 따라서, 한중산업단지의 설립·운영·개발에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제20조.

31)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사례는 1974년 1월 30일 체결되고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지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들 수

대하여는 한중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게 되면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국내 입법 내지 정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개발에서의 다양한 조직 및 권한, 이행체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새만금 지역에 단독으로 한국측 한중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므로 새만금특별법의 개정만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만, 향후 한중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단독입법을 통하여 국가간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³²⁾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있다 (DAUM 백과사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1916>, 2015년 10월 26일 최종 검색). 그러나, 동 협정의 경우에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외국석유회사들과 탐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3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 10. 30. 최종 검색)

제 3 절 새만금특별법 및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지역에 우선 조성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진체계와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내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동법 개정안을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서는 동법에 근거한 규제특례 사항과 함께 다른 법률에 더욱 완화된 규제특례가 있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은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규제특례지역이 있는 바, 이들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한중 산업단지 추진의 법제지원에 필요한 방향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1. 새만금 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정책

동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³³⁾
<p>제 5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2015년 3월 19일 개최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제시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원활히 하고, 새만금을 한중FTA를 계기로 한 대중국 전진기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규제특례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고 그 성과를 파악하여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등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다.³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주요내용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에서는 한중경협단지의 조성을 위한 국경간 인력이동 원활화와 통관 및 새만금 입주기업의 편의성 제고, 새만금지역 내 사업시행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⁵⁾

33)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 10. 30. 최종 검색)

3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 2015년 3월 19일자 보도자료, 1면.

3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 2015년 3월 19일자 보도자료, 1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³⁶⁾

① 고용규제

먼저,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법무부),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5억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하였다(고용부). 예를 들어, 현재 내국인 120명, 외국인 20명을 고용중인 외투기업이 5억 증액투자 후 내국인 50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는 현행 25명에서 70명으로 개선된다.

② 출입국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하였다(법무부).

③ 통 관

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의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취득을 지원하며,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관세청). 또한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FTA아카데미’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④ 시험·인증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산업부).

⑤ 금 융

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천만 불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기재부),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 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3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 2015년 3월 19일자 보도자료, 1-3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p>⑥ 입지규제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납품액 기준 전체 매출액 30% 이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시 임대기간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p> <p>⑦ 개발규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 공유수면 매립시 민간사업시행자는 매립사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만 취득,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총사업비 정산제도)된다.</p> <p>⑧ 환경규제 기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서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p>	

아래의 [표 5]는 위에서 밝힌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간략한 내용과 정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5] 새만금 지역 입주기업 지원방안 및 규제특례³⁷⁾

	내 용
근 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 적	새만금지역 친환경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균형발전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절 차	사업시행자→새만금청장 승인
입주자격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입주현황(외투)	5(2)

3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7면의 표를 일부 인용.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내 용
조세 감면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 제조업: 3천(1천)만불 ↑ - 물류업: 1천(5백)만불 ↑ - 관광업: 2천(1천)만불 ↑ - R&D: 2백(1백)만불 ↑ &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구원10인 ↑ 고용 5년간 100%, 2년간 50% (-의료기관: 5백만불 ↑) (괄호는 3년간 100%, 2년 (-개발사업자: 3천만불 ↑) 간 50%)
	지방세	최장 15년까지 감면(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관 세	5년간 100%
	V.A.T. 개별 소비세	5년간 100%
입지지원		국공유지 : 임대 및 임대료감면(~100년, 75~100%)
기 타		외국교육기관 자금지원
규제특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분양가상한제배제 등 <외투기업국한 특례> - 노동규제완화 : 의무고용 완화, 유급휴가 배제, 파견근 로자규제 완화 - 1만불 ↓ 외국환거래 무신고 - 외국인전용카지노 <새만금 규제특례 지역 조성방안>의 8개 분야 - 고용규제, 출입국, 통관, 시험·인증, 금융, 입지규제, 개발규제, 환경규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주기업 지원방안은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현황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꾸준한 개정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2015는 8월 11일 동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동법 개정 내용에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 뿐만 아니라, 2014년 7월 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에 대한 공동 협력 합의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한-중 양국 기업의 원활한 협력 방식 등의 개정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개정 이유 (2015.8.11)³⁸⁾
<p>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공공기관,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함.(안 제8조제1항제5호 개정)</p>

38)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정보(www.law.go.kr 2015. 10. 30. 최종 검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개정 이유 (2015.8.11)

- 나. 새만금개발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개정)
- 다. 방대한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세분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바,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라.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 마.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장기간 노출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 바.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및 새만금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아.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개정 이유 (2015.8.11)

자. 공유재산의 임대 주체를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도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함.(안 제46조 개정)

차.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체계를 강화함.(안 제58조제2항 개정)

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령자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일부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하여 근로자과건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과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58조의2 신설)

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합중국화폐 총 5억 달러 이상 등의 투자계획과 특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시설 등을 허가신청 시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적합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업 투자를 원활히 유치하고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63조제8항 신설)

파.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등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안 제70조 개정)

이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위의 제·개정 이유 ‘가, 아, 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규모 민간사업자 및 국내기업·협력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차, 카’에 대하여서는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 라, 바, 카’와 ‘타’에서는 각각 민간시행자와 민간시행자·외투기업·국내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편, ‘나, 다, 파’에서 보듯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오 같이 새만금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으로써 향후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한중산업단지 조성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 현황

(1) 조세감면

새만금개발청은 『조세법 개정에 따른 7년형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15-4호, 2015.7.23)을 통하여 조세감면여부를 심의·의결할 ‘새만금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항 1호는 새만금 지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사업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7년간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초 5년간은 조세를 100% 면제 받고, 추가 2년간에는 50%를 감면받게 된다.

(2) 부지선택 규제완화

새만금개발청은 2015년 9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새만금산업단지에 기업의 적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³⁹⁾

39)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개발 가속화-유치업종 배치 제한 폐지 등 기업수요 탄력적 대응”, 보도자료, 2015. 9. 11., 1-2면.

아래의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2015년 9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그동안 입주희망업체가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상이한 위치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배치계획 변경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유치업종별 배치위치제한을 없애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업종별 공급면적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⁴⁰⁾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장기임대 용지도 공급면적 200ha는 유지하되, 위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기업수요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⁴¹⁾

새만금개발청은 동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배치계획 변경 등에 3~4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적기투자 저해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용지의 적기 공급 및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새만금개발청의 노력은 새만금지역에 설치되는 한중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2015년 6월 23일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7월 1일부터 해당지역 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4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개발 가속화-유치업종 배치 제한 폐지 등 기업수요 탄력적 대응”, 1면.

4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개발 가속화-유치업종 배치 제한 폐지 등 기업수요 탄력적 대응”, 1면.

42)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개발 가속화-유치업종 배치 제한 폐지 등 기업수요 탄력적 대응”, 2면.

한도가 확대되었다.⁴³⁾ 즉, 투자자의 비자(C-3)발급 제출서류를 새만금 개발청장 추천서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고용한도를 기존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⁴⁴⁾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만 했으나 이러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 졌다.⁴⁵⁾

새만금개발청장의 C-3 비자 발급 추천 기준 ⁴⁶⁾
<p><input type="checkbox"/> 투자업체 임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외국인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거주 임직원으로서 소속기업의 업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p><input type="checkbox"/> 투자업체 임직원의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p><input type="checkbox"/> 예비투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관련 투자를 위한 현지조사, 시장조사, 상담, 계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

4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법무부·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2015. 7. 15., 1면.

4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1면.

4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2면.

4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법무부·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2015. 7. 15., 3면.

새만금개발청장의 C-3 비자 발급 추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외국인과 공동투자를 원하는 국내 기업체가 투자 협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사증 발급 추천을 요청하는 사람 -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문을 초청한 사람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는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⁴⁷⁾

(4)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 후속조치 현황

고용규제에 관하여서는 2015년 7월 1일 법무부 외국인 체류관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전문인력 고용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고용부 외국인력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내국인 고용에 상응하여 외국인 일반근로자 추가 고용에 대한 허용을 추진 중에 있다.⁴⁸⁾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출입국 비자 발급절차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⁴⁹⁾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하여 환경부는 사업시행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7월 24일 『새

47)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3면.

48) 새만금개발청, 『제7차 무투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5. 9., 13면; 양병찬, “새만금 규제특례 진행현황에 대한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31면.

49)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법무부·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2015. 7. 15., 2면.

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외투기업 협력 업체도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가 허용되고 총사업비정산 후 잔여매립지 취득시 75% 상당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⁰⁾

통관 편리화를 위하여서는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AEO취득을 지원하고,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연내에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과 한중FTA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무료 보급하기로 한 바 있다.⁵¹⁾

시험·인증과 관련하여서는 한·중 양국 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15년 8월 25일 개시하였으며,⁵²⁾ 2015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질검총국 순다웨이부국장은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⁵³⁾

또한, 일정요건 충족기업 수출대금 수령 시 증비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 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한편 위안화 결제수단 및 결제망 강화를 위하여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장기 과제로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⁵⁴⁾

제 4 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유사 정책 및 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서 제시된 몇 가지 법률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50) 양병찬, “새만금 규제특례 진행현황에 대한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31면.

51) 새만금개발청, 『제7차 무투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5. 9., 13면.

52) 새만금개발청, 『제7차 무투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5. 9., 13면.

53) 산업통상자원부, 『비관세장벽 해결로 한중FTA 활용 극대화 추구』, 2015.9.2.,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7509&bbs_cd_n=81 2015. 10. 30. 검색)

54) 양병찬, “새만금 규제특례 진행현황에 대한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31면.

에 관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비교 가능한 다양한 정책 및 관련 법규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서만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한다.⁵⁵⁾

아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등 유사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조성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1. 국내의 경제특구와 근거 법제

국내에는 각각의 근거 법률 또는 정책에 따라 설립된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경제특구가 있다. 즉,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수립된 7개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클러스터, 금융중심지, 과학벨트, 연구개발단지, 첨단의료단지, 교육국제화 특구, 혁신도시 등 목적별, 지역별로 다양한 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1,074개의 산업단지들에는 국가산업단지, 도심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에도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지역도 포함된다.⁵⁶⁾

아래 [표 6]은 국내 각 산업지역 관련 기관 및 법제를 간단하게 정리한 표이다.

55) 한중FTA 협정문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각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분석과 한-중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은 장기간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6)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산업단지정보 - 산업단지 현황 - 『한국 산업단지총람 - 1074개 전국 산업단지 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참고
(http://www.kicox.or.kr/home/facility/service_link01.jsp 2015년 10월 26일 최종 검색)

[표 6] 국내 각 경제특구의 종류와 관련 법규57)

명칭	소관 부처	관리기관	관련 법규
세만금	국토교통부	세만금개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인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보건복지부		

57)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http://www.fezonez.go.kr/global/index.do>) 2015. 10. 30. 검색)의 각 경제자유구역 정보와 각 구별 근거법규(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활용)를 조사하여 저자가 직접 종합하여 작성한 표임.

제 4 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명 칭	소관 부처	관리기관	관련 법규
부산-진해	상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상同
광양만권	상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상同
경기도 황해	상同	황해경제 자유구역청	상同
대구-경북	상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상同
동해안권	상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상同
충 북	상同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상同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적 분석

명 칭	소관 부처	관리기관	관련 법규
금융중심지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부산금융중심지 지원센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개발특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첨단의료 복합단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생명 과학단지지원센터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국제화특구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위원회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클러스터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식품산업진흥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 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명 칭	소관 부처	관리기관	관련 법규
혁신도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첨단 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창조경제 혁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대전창조 경제협의회, 대구창조 경제협의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각 특구 및 산업단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자원에서 지역 간 연계와 특성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중산업단지와 다른 경제특구 간 비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한중FTA에 따라 조성되는 지역이지만 새만금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및 산업별 투자유치에 더욱 어려움이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새만금 산업단지 추진을 위하여서는 최소한 다른 경제특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아래의 [표 7]은 한중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될 새만금 지역과 다른 경제특구에서의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표 7]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외 다른 경제특구의 지원 정책 비교⁵⁸⁾

구분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지역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국가	일반
근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중FTA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목적	새만금지역 친환경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균형발전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외국투자촉진 균형발전 도모	외국투자 유치 촉진	외국투자 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균형국토개발 지속적인 산업발전	
절차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 승인	시도지사 요청 →위원회 심의의결 →산업부장관 지정	시도지사 요청 →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지정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요청 →위원회 심의 →산업부장관지정	(행정기관 장요청) →심의회 심의 →국토부 장관지정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지정

58)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7면의 표를 수정·보완하였음.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적 분석

구 분	세민금 한중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국 가	일 반
입주자격	국내·외투기업 (동반입주 국내기업)	국내·외투기업	·외투비율 30%↑, 5천만원↑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 제조업, 물류업 중 하나	국내·외투기업 · 제조업: 수출액 50%↑ · 도매업: 수출입물량 50%↑ · 물류업, 사업지원 업종	국내·외투기업	
입주기업 (외투)	5(2)	2,186(157)	223(223)	275(178)	38,797	17,953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외투기업	
조 세 감 면	· 제조업: 3천(1천)만불↑ · 물류업: 1천(5백)만불↑ · 관광업: 2천(1천)만불↑ · R&D: 2백(1백)만불↑ & 연구원 10인↑ 고용 (· 의료기관: 5백만불↑) (· 개발사업자: 3천만불↑)	· 제조업: 3천(1천)만불↑ · 물류업: 1천(5백)만불↑ · 관광업: 2천(1천)만불↑ · R&D: 2백(1백)만불↑ & 연구원 10인↑ 고용 (· 의료기관: 5백만불↑) (· 개발사업자: 3천만불↑)	· 제조업: 1천만불↑ · 물류업: 5백만불↑ 3년간 100%, 2년간 50%	· 제조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3년간 100%, 2년간 50%		-

제 4 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구 분	세만금 한중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국 가	일 반
	세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5년간 100%, 2년간 50% (괄호는 3년간 100%, 2년간 50%)	경자위 의결을 통해 5년간 100%, 2년간 50% (괄호는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최장 15년까지 감면(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법인세·소득세 감면기준과 동일(조세특례제한법) *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수도권-50%)	
관 세	5년간 100%	5년간 100% (7년:개별형외투자지역 과동일)	5년간 100% (개별형: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면제	-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5년간 100%	-	-	-	-	

제 2 장 한중산업단지 관련 정책 및 법적 분석

구 분	세민금 한중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국 가	일 반
입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 임대 및 임대료감면 (~100년, 7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 임대 및 임대료감면 (~50년, 5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 일괄매입 (수도권: 40:60, 지방: 75:25) · 임대료 : 부지가액 1%, 75~100%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 일괄매입 · 국유지 저가임대 : 부지가액의 1%수준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 자금지원도 기반시설 지원기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활동 등 자금지원 		-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 분양가상한제배제 등 <p><외투기업국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규제완화: 의무고용·유급휴가배제, 파견근로자규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 분양가상한제배제 등 <p><외투기업국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규제완화: 의무고용·유급휴가배제, 파견근로자규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배제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특별공급 : 건설량 10~20%, 입주예정기업, 교육·연구기관종사자 	

제 4 절 기타 관련 정책 및 범제와의 비교

구 분	세민금 한중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산업단지	
				국 가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불 ↓ 외국환거래 무신고 · 외국인 전용카지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불 ↓ 외국환거래 무신고 · 외국인 전용카지노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경우 다른 경제특구들보다 우수한 입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장을 바꾸어 중국의 최근 정책 현황과 경협단지 조성 경험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를 공유수면매립 사업시행자 및 업종별 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지원 정책과 법제 마련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제 3 장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관련정책

제 1 절 중국의 중한산업단지 추진 연혁

한중FTA 제17장 제17.26조에서 산업단지(the Industrial Complexes/Parks)의 설립·운영·개발⁵⁹⁾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중국측에서도 중한산업단지(中韩产业园)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한국측도 협의체 개설 이전에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향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갈 필요가 있다.

중국측은 3개 지역(연태, 염성, 광둥)의 중한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바 있으며, 아래의 [표 8]에서는 각 중한 산업단지의 조성방안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표 8] 중국의 중한 산업단지 추진계획⁶⁰⁾

	연태이	염 성
명 칭	산둥성 연태이 중한산업원(烟台中韩产业园) (15.6.29. 기준)	강소성 염청 중한산업원(中韩盐城产业园) (15.7.7. 기준)
면 적	349km ² (3개구:신흥산업공생구, 임항경제구, 현대서비스산업클러스터)	210(45)km ² (3개구: 국가급염청경제기술개발구(100), 따평항경제구, 청난신구(40))
추진 근거	연태이중한산업원계획청사진(烟台中韩产业园规划蓝图)	중한염청산업원 발전계획 요약(中韩盐城产业园发展规划纲要)

59) “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Industrial Complexes/Parks to be designated by the Parties”

60) 박찬욱,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8., 97-98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엔타이	엔 청
추진 방향	一帶一路의 중요한 플랫폼	一帶一路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한-중 교류협력 주요통로 기능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원 및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해 중한산업투자 기금(10억위안)을 조성 (15.4.30.)하여 산업단지 기초 시설 건설 등에 투입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상하이, 텐진, 광둥성, 푸젠성) 정책 벤치마킹 추진 - 한중FTA 산업협력시험구, 동북아중합국제물류거점, 일대일로 전략협력 플랫폼, 한국식스마트시티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목표) 5대산업기지 건설, 승용차 100만대 생산, 15만대 미래형 전기자동차 생산, 연구개발 기지 마련, 녹색산업 기지 및 인재 양성 센터 시범구를 설립 - (장기목표) 산업현대화를 바탕으로 세계화에 앞장서며, 저탄소 생태보호환경구 조성, 한중문화교류센터 설립을 목표
중점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서비스): 금융보험, 문화컨텐츠, 의료, 실버 - 서구(제조/물류): 로봇, 첨단 장비, 신에너지, 에너지절감, 전자정보, 해양산업/물류, 비즈니스, 검역·검사 인증,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청경제기술개발구: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자동차, 태양열, 지능형장비제조, SW, 서비스 아웃소싱, 전자상거래물류 - 따평항경제구: 항만물류, 중형 장비 산업 - 청난신구: 빅데이터, 헬스케어·뷰티

제 2 절 관련 정책

중국의 최근 대외경제 정책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해상실크로드) 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AIIB 창설하고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중-미 BIT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국경간 협력 사업과 해외경제무역합작구 건설, 해외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⁶¹⁾

대내적으로는 대내개혁을 목표로 하는 ‘13.5계획(“十三五” 规划(2016~2020))’⁶²⁾, ‘중국 2049 전략’⁶³⁾,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⁶⁴⁾과 함께 다양한 목적별 시범지역(자유무역시험구⁶⁵⁾, 전자상거래시험구⁶⁶⁾

61)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61-62면 참조.

62) 2015년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이하, 13.5 계획) 기초연구에서는 『서비스수출입관리조례(服务进出口管理条例)』와 『중점서비스 수출영역 지도목록(重点服务出口领域指导目录)』 제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무역발전기금(服务贸易发展专项资金)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영업세를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창조경제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무역지원 중점프로젝트를 통하여 서비스무역의 편리화, 인력이동, 자격 상호인증, 업별 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갈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13.5 계획 기간동안 상무부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선전첸하이 등의 현대서비스업 창조혁신 시범구(深圳前海等现代服务业创新示范区) 건설에 참여하여 서비스무역 수출원구 운용방안을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의 정책적 활용전략’, 4-5면).

63) 중국이 ‘중국 2049 전략’에서 밝히고 있는 미래 변화 6대 동력은 세계경제 및 금융일체화, 지구촌 네트워크화, 신흥국의 역량 강화, 도시화 추진 가속화, 유전자 및 생물 등의 기술혁명, 녹색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다(中国经济网-《经济日报》, ‘《中国2049战略》发布：中国经济发展呈现新趋势’, 2015. 6. 4. 기사 (http://views.ce.cn/view/ent/201506/04/t20150604_5546498.shtml)).

64) 중국이 2015년 5월 19일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서 밝히고 있는 단계별 목표 및 10대 핵심 산업분야에 관하여서는 정진우,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 밑그림 ‘중국 제조 2025’ 발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442호, KOTRA, 2015. 5. 22. (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21M.html?BBS_ID=10&ARTICLE_SE=20302&ARTICLE_ID=5028807&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M00006) 2015. 10. 30. 검색)을 참조.

65)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이래 2015년 4월에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면적 확대와 함께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도 추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4대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운영방침인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을 마련하였으며, 네거티브리스트 형식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와 금융개혁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66) 중국의 전자상거래시험구에 대하여서는 김명아,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2014. 12., 47-50면과 105-108면을 참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2015)』⁶⁷⁾나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准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⁶⁸⁾, 『외국투자법(초안)(中華人民共和國外國投資法(草案徵求意見稿))』⁶⁹⁾ 마련을 통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방식을 전환하고, 중미BIT⁷⁰⁾에서도 네거티브리스트와 국가안전심사를 주요 협상 내용으로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기울이고 있다.⁷¹⁾

특히, 중국 정부는 한중FTA 체결을 통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중산업단지(중한산업단지) 공동 조성·개발이나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⁷²⁾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중산업단지 추진이나 중국측 중한산업단지에 요구할 상호호혜적인 개방조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험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중국의 중한 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중한 산업단지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측 요청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7)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政策發布中心]-[發展改革委令]-[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令 第22號]에서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2015年修訂)》’를 클릭하면 원문을 열람할 수 있음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t20150313_667332.html 2015. 10. 30. 검색)

68) 중국 국무원(國務院) 홈페이지 - [政策] - [政府信息公開專欄] -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准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的通知(國办发[2015]23号)]에서 원문과 설명을 함께 열람할 수 있음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27.htm 2015. 10. 30. 검색)

69)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新聞發布]-[新聞發言人談話]-[商務部新聞發言人孫繼文就《中華人民共和國外國投資法(草案徵求意見稿)》公開徵求意見發表談話]

(<http://www.mofcom.gov.cn/article/ae/ag/201501/20150100871007.shtml> 2015. 12. 16. 검색)

70) 中美投資協定正式開啟負面清單談判’, 新華網 > 財經 > 正文 記事, 2015. 6. 19. 기사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6/19/c_127931699.htm 2015. 12. 16. 검색)

71)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78-81면의 상세내용 참조.

72) 조용성, 『특과원스페셜』중국 지방도시, 한중산업단지 조성 분... 전국에 이미 9곳’, 아주경제, 2015. 7. 20. 기사, (<http://kr.ajunews.com/view/20150720103913874> 2015. 10. 30. 검색).

또한, 중국의 다른 규제완화지역(특구 등)의 운용 정책과 중한 산업단지 추진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유사 정책 수용 방안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고 있는 정책 및 법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중한 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 시 중국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 내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관련 정책 수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절을 바꾸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관련 정책 및 법규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제 3 절 중국의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간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³⁾

아래에서는 중국이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양자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공업원구 협력 사례

쑤저우공업원구(苏州工业园区)의 행정구역 면적은 288 km²에 달하며, 중국-싱가포르합작구 면적은 80km²로서⁷⁴⁾ 현재는 중국 정부가 52%, 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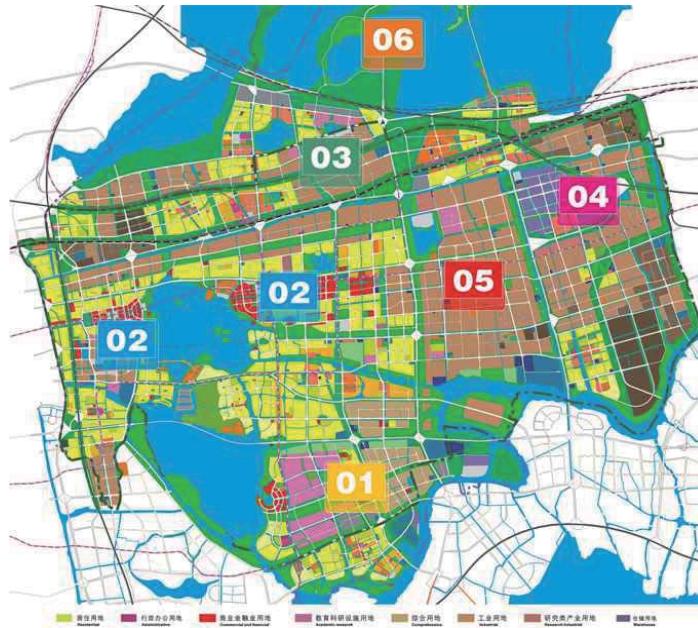
73) 텐진 에코시티(中新天津生态城) (중-싱가포르) / 탕산만 에코시티(曹妃甸国际生态城) (중-스웨덴) 등 중국이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단지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74)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중국-싱가폴 합작 쑤저우공업단지의 개발과정 및 관련 법제 소개』. 2013. 10. 15., 2면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report/31677?astSeq=56> 2015. 10. 30. 검색)

가포르가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⁷⁵⁾

쭈저우공업원은 권역별로 6개 전환발전중심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 4]는 쭈저우공업원구의 구성도이다.

[그림 4] 쭈저우공업원의 6개 환발전중심기지(转型发展主阵地)⁷⁶⁾



: 01. 독서호과학교육혁신구 / 02. 금계호중앙상업구 / 03. 중신생태과학기술타운 / 04. 종합보세구 / 05. 하이테크산업구-III / 06. 양청호생태관광리조트단지

쭈저우공업원은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수행한 성공적인 공업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⁷⁷⁾ 중국에서 가장 빠른 발전속

75) 윤도진, 비즈니스워치 창간2주년 특별기획 <좋은기업>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중국 기업 편 ① 삼성의 대륙 전초기지 '쭈저우공업원구', Business Watch, 2015. 5. 27. 기사 (<http://m.bizwatch.co.kr/?mod=mview&uid=15280> 2015. 10. 30. 검색)

76) 중국의 苏州工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科学规划]에 소개된 6개 전환발전 중심기지 (http://www.sipac.gov.cn/zjyq/kxgh/201107/t20110708_103663.htm 2015. 10. 30. 최종 검색).

77) 중국-싱가포르 연합협력이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중국측은 부총리, 상무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장쑤성인민정부, 쭈저우시인민정부

도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발구 중 하나로서 개혁개방실험기지, 국제협력시범구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⁷⁸⁾

관리위원회는 외자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부지 알선, 인력 확보, 환경문제 등 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2주일 내에 처리된다.⁷⁹⁾

쑤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투자유치, 허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자 발급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 허가 필요없이 독자적 결정권한을 가지며, 공업원구 내에서 24시간 독립세관을 운영함으로써 최대 10시간 내 통관이 완료된다.⁸⁰⁾

또한, 원구 내에는 선진적인 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가 확보되어 있다. 공업원구 내에 UC Berkele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onash University,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등의 명문대를 포함하여, 24개 대학이 입주하였으며, 기업들이 석·박사급 고급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주거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⁸¹⁾

가, 싱가포르측은 부총리, 무역공업부, 외교부, 총리실, 국가발전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형태이며, 양자간 업무위원회와 자문기구를 함께 두어 운영하고 있다 (苏州工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中新联合协调理事会机构(2013)]

(http://www.sipac.gov.cn/zjyq/zxhz/201403/t20140319_262392.htm 2015. 10. 30. 검색).

78) ‘외자이용규모 다년간 연속 중국 국내 개발구 중 1위, 상무부 주관 국가급개발구 2009년 투자환경종합평가 2위, 중국 최초 신형공업화시범기지, 중국 최초 생태공업시범구, 중국 최초 국가지적재산권시범창업구, 중국 최초 서비스외주시범기지, 중국 최초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장려우대정책 시행지역, 중국 유일의 서비스무역혁신시범기지, 중국 유일의 국가급 비즈니스관광시범구, 중국 유일의 나노기술혁신 및 산업화기지, 중국도시에서 제일 경쟁력을 갖춘 개발구 중1위’로 알려져 있다(법체처 법령정보관리원, 『중국-싱가폴 합작 쑤저우공업단지의 개발과정 및 관련 법제 소개』. 10면).

79) 윤도진, 비즈니스워치 창간2주년 특별기획 <좋은기업>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중국 기업 편 ① 삼성의 대륙 전초기지 '쑤저우공업원구', Business Watch, 2015. 5. 27. 기사 (<http://m.bizwatch.co.kr/?mod=mview&uid=15280> 2015. 10. 30. 검색)

80) 윤도진, 비즈니스워치 창간2주년 특별기획 <좋은기업>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중국 기업 편 ① 삼성의 대륙 전초기지 '쑤저우공업원구'

81) 苏州工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发展环境] - [人才资源] (http://www.sipac.gov.cn/zjyq/fzhj/201107/t20110708_103699.htm)

2.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산업원구 협력 사례

중국 광시자치구 친저우시(广西 钦州市)는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중국-ASEAN 자유무역구의 교두보이며, 중국 서남부의 새로운 경제발전축으로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친저우시는 광시북부만경제구의 거점도시로서 대형 항만 건설과 친저우항 공업원구(138km², 화학·중공업), 고신기술개발구(44km², 전자·바이오), 산양만 국제관광레저타운(100km²), 빈하이신도시(45km²) 로 구성되어 있다.⁸²⁾

친저우산업원구(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의 조성위치와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 아래 [그림 5]와 [그림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친저우산업원구는 1기~3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저우항 공업원구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5] 친저우산업원구의 위치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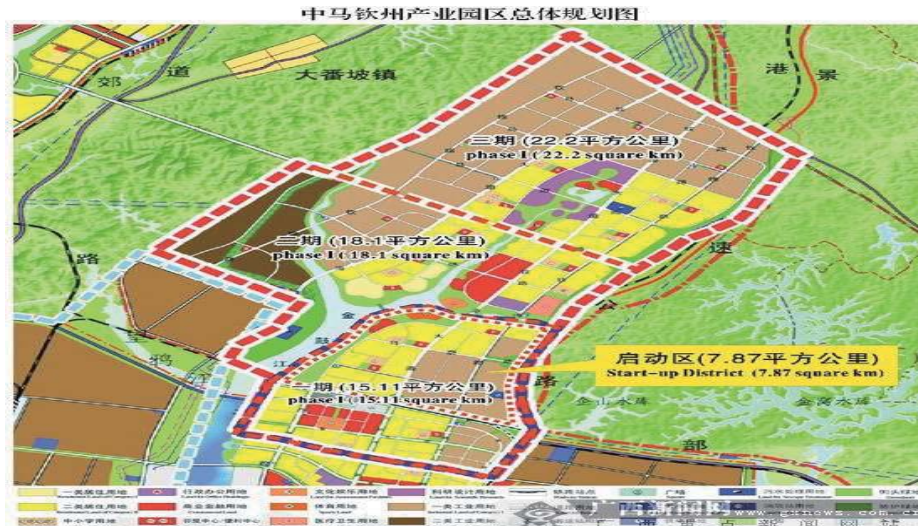


82) 中马钦州产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发展战略]

(<http://www.qip.gov.cn/News/Detail2/2ab171bd-6a05-4a68-9574-80dbf307a97c?SignName=fzzl> 2015. 10. 30. 최종 검색)

83) www.baidu.com에서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地图’를 검색하여 인용하였음 (<http://image.baidu.com/search> 2015. 10. 30. 최종 검색).

[그림 6] 친저우산업원구의 구성 및 면적⁸⁴⁾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원구’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정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중국의 세 번째 원구(중-싱가포르 쭈저우공업원구, 중-싱가포르 텐진에코시티)로서 말레이시아에 설치한 ‘말레이시아-중국 관단 산업원구’와 Twin Park(两国双园)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⁸⁵⁾

2012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원구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2013년 10월 Twin Park의 산업클러스터식 발전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⁸⁶⁾ 2014년 11월 동 원구는 중국-ASEAN 협력시범구(中国-东盟合作示范区)로 지정되어 산업발전·금융개혁·외환관리·인력양성·토지이용 등에 대한 선행시험조치와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

84) www.baidu.com에서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地图’를 검색하여 인용하였음
(<http://image.baidu.com/search> 2015. 10. 30. 최종 검색).

85) baidu,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http://baike.baidu.com/link?url=ZaPXt5pkqg_5L5oxBk_E_6UTDYyX1OYHvm89mkiB7APhEkzyOGLIKUM7ftUGqi66pJ-Op-idFqgvK85jPn_xK 2015. 12. 16. 검색)

86)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简介]
(<http://www.qip.gov.cn/News/Detail2/7ba78e32-9430-438f-bf4d-06f73d219d39?SignName=yqjj> 2015. 12. 16. 검색)

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말레이시아 특화, 종합적 경제발전, 금융·비즈니스, 과학기술·교육, 문화·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특색있는 여행산업 육성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⁸⁷⁾

3. 다른 형태의 경험·개방 지역

(1) 해외소재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

1) 운영방식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국기업은 해외에서 SOC 기반을 갖춘 공업원구, 과학기술산업원구 등의 각종 경제무역합작구를 설치하고 있다.⁸⁸⁾ 이는 중국기업-외국정부 간 협상 체결 방식을 통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의 양자경제협의를 구축하는 형태이다.⁸⁹⁾

이처럼 수년간 중국 정부는 해외의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국의 지역개발과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양국 윈윈전략을 추진하고 있다.⁹⁰⁾

87) 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中马钦州产业园区发展战略] (<http://www.qip.gov.cn/News/Detail2/7ba78e32-9430-438f-bf4d-06f73d219d39?SignIn=yqjj> 2015. 12. 16. 검색)

88) 김명아,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65면.

89) 김명아,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65-67면 참조.

90)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해외진출(走出去)”전략으로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적극 장려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새로운 형태인 중국해외경제협력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지 투자 기업에 2~3억 위안화의 재정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최대 20억 인민폐 대출 등의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 다만 현재 합작구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개도국에 집중됨에 따라 현지 제도와 신용상의 위험, 현지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인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3. 3. 7. 기사 (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 - [오늘의 시사금융용어] - [中해외경제무역합작구]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44> 2015. 10. 30. 최종 검색)).

이러한 해외경제무역합작구 건설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과 해외현지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결합하여 고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무역 마찰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법적 근거

중국 상무부는 2006년 6월 『해외 중국경제무역합작구의 기본요건 및 신청절차(境外中国经济贸易合作区的基本要求和申办程序)』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해외진출(走出去)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⁹¹⁾ 이때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협력단지 건설사업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9개가 승인되었으며,⁹²⁾ 2015년에는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중이다.⁹³⁾

3) 투자 분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설립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해외경제합작구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자원개발과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⁹⁴⁾

중국 정부의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한중국제산업단지 승인 사례⁹⁵⁾는

91) 乔慧娟, “论我国境外经贸合作区的风险防范问题 - 以赞比亚中国经贸合作区为视角”, 商业时代, 2014. 8. 6.,

(http://www.govinfo.so/news_info.php?id=37898 2015. 10. 30. 최종 검색)

9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홈페이지 - [首页] - [境外经济贸易合作区] - [合作区简介] (http://www.mofcom.gov.cn/article/zt_jwjmyhzq/subject/ 2015. 10. 30. 최종 검색)

93) 연합뉴스,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70개 합작구 설립”, 2015. 7. 14.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090700097.HTML?input=1179m> 2015. 10. 30. 최종 검색)

94) 김명아,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169-172면 참조.

9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안기업도시’ 선정을 통하여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중국 정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방향성 제시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중 경제협단지 운용을 통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설립한 해외경제무역합작구의 경우 자원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가 승인한 한중국제산업 단지는 IT, BT, 물류, R&D 등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과 관리방식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사업에 대하여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 관련 정책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협조를 얻거나 해당지역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웨이하이시)⁹⁶⁾

웨이하이시(威海市)는 중국 산둥성의 최동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한국과 문화적·역사적·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웨이하이시(威海市) 정부는 2014년 2월 28일 『중·한(웨이하이) 경제협력 시범구 건설 가속에 관한 실시의견(威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中韩(威海) 经济合作示范区的实施意见(威政发〔2014〕12号))』을 발표하였다. 동 실시의견에서 웨이하이시는 중국과 한국의 도시 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산업협력 플랫폼을 조성할 것을 밝힌 바 있다.⁹⁷⁾

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무안기업도시는 해제되었음. 2013년 2월 14일의 무안기업도시 지구지정 해제는 중국측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분 51%를 소유한 한중미래도시개발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를 철회하면서 비롯되었음(충효예신문, “한중미래도시개발(주) 청산, 무안기업도시 22일 개발구역 지정 해제”, 2013. 3. 11. 기사

(www.chysm.net/nm/atc/view.asp?ik=355 2015. 10. 30. 최종 검색)

96) ‘한중FTA 지방경제협력’(협정문 제17.25조) 규정에는 IFEZ-웨이하이 지방경제 시범지역을 가리키는 정확한 영문명이 없음: ‘the local economic cooperation (지방경제 협력)’, ‘pilot cooperation project (시범협력사업)’, ‘demonstration areas (시범지구)’.

97) 김명아, ‘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 7면.

또한, 한국과의 물품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업에서의 협력 강화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정책 내용으로 삼고 있다.⁹⁸⁾ 이에 더하여 통관업무의 최적화나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웨이하이시에 종합보세구역 설치, 인재양성, 정책연구 및 홍보 강화 등을 동 실시의견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⁹⁹⁾

또한, 2015년 3월 16일에는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 추진 가속에 관한 제1차 실시방안(关于加快推动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第一批实施方案)』을 발표하고, 한·중 FTA(中韩自贸区) 지방경제협력 시범구(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¹⁰⁰⁾ 또한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개방시험구(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 운용과 ‘한·중 FTA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빌딩(中韩自贸区服务贸易和电子商务大厦)’ 건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상당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¹⁰¹⁾

이러한 중국측(웨이하이시)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의 제도적 특징과 정책수행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자유무역시험구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과 2014년 7월 제정

98) 威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中韩(威海)经济合作示范区的实施意见 제2조 3항~5항 (중국 웨이하이시 정부 홈페이지-[政策规定] - [市政府文件] - [威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中韩(威海)经济合作示范区的实施意见] (http://zfxgk.weihai.gov.cn/xxgk/jcms_files/jcms1/web83/site/art/2014/3/6/art_6993_86343.html 2015. 10. 30. 검색)).

99) 威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中韩(威海)经济合作示范区的实施意见 제2조 6항~11항

100) 김명아, ‘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 7면.

101) 威海网·威海日报, '威海出台加快推动中韩自贸区合作首批实施方案', 2015. 3. 17. 인터넷신문기사 (http://www.whnews.cn/news/node/2015-03/17/content_6323832.htm 2015. 10. 26. 최종 검색).

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중국자유무역시험구 조례(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條例)』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3월 광둥, 푸젠, 텐진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⁰²⁾

[표 9] 중국 4대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역별 주요기능¹⁰³⁾

지 역	구 역	중점 기능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역외 금융 및 무역 발전환경 조성
	루지아웨이금융단지 창장하이테크원구 진치아오개발구	금융무역, 선진제조, 혁신 과학기술 등 산업 발전
광 동	광저우난샤신구	운송물류, 특화금융(niche financial), 국제비즈니스무역, 첨단제조업 등 산업 발전
	선전첸하이서커우신구	금융,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서비스업 발전
	주하이형친신구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문화과학기술 및 첨단엔지니어링 등 산업 발전
텐 진	텐진공항신구	항공산업, 선진제조업 및 물류산업
	텐진항신구	금융리스, 항운금융
	빈하이신구	팩토링, 리스 등 혁신 금융산업

102) 2014년 12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4대 자유무역시험구 내 관련 행정허가 임시 조정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授权国务院在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 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 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以及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扩展区域暂时调整有关法律规定的行政审批的决定)을 내린 바 있다. 즉,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별도의 정책이 적용된다.

103) KIEP 북경사무소, ‘중국 4대 자유무역구’,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8

지 역	구 역	중점 기능
푸 쟈	푸저우신구	타이완 첨단 신기술산업 이전
	핑탄신구	창조문화산업 및 여행·레저 산업
	샤먼신구	타이완 자유무역항과 연계

자유무역시험구는 외자유치 촉진과 서비스업 발전 및 무역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러한 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Pilot Program)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10]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과 법적 근거¹⁰⁴⁾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시험구)
근거 ¹⁰⁵⁾	- 자유무역시험구종합방안(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외자 진입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
세관 관리	- “경내 관외” 세관감독관리 - 보세구역 내 통관·검역 절차 없는 자유로운 화물 반입·반출
세관 수속	- 세관 관할이 없는 지역 - 무역 제한 없는 관세면제 지역 - 일반적인 검사수속을 축소하여 기업 거래비용 인하
관세·조세	- 관세 면제 - 관세 외의 조세우대 가능

No.6, 2015년 4월 23일, 10면의 표를 인용.

104) 박찬욱,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8., 21면의 표를 인용.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시험구)	
보관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주요 기능	- 상품무역, 투자, 서비스, 금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외환 관리	- 자유무역시험구건설 외환관리 실시세칙(自由贸易试验区建设外汇管理实施细则)

중국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2015년 5월 20일부터 ‘외국인투자제한 네거티브리스트’가 적용되어 오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¹⁰⁶⁾는 2015년 4월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에 대한 일정한 경험을 쌓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¹⁰⁷⁾ 중-미 BIT 협상¹⁰⁸⁾에서나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05)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제6조에서는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가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民事活动必须遵守法律,法律没有规定的,应当遵守国家政策).”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헌법과 입법법에 따른 법제 형식 외에도 다양한 정책성 문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일정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

106) 김성애, “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발효”,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DB정보, 2015. 3. 24.

(<http://www.globalwindow.org> 2015. 10. 26. 최종 검색).

107) 중국이 공개한 『외국투자법(초안) (外国投资法(草案))』에서는 지금의 사전심사승인 원칙을 폐지하고, 심사대상 특별관리목록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108) 2015년 6월 8일부터 5일간 제19회 중미투자협정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동 협상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를 최초로 교환한 바 있다.(‘中美投资协定正式开启负面清单谈判’, 新华网 > 财经 > 正文 기사, 2015. 6. 19.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6/19/c_127931699.htm 2015. 10. 26. 최종 검색).

제 4 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제 1 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시진핑정부는 ‘지역경제 발전(区域发展重点和区域协调发展机制)’을 ‘13.5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2016-2020年)规划)의 핵심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며,¹⁰⁹⁾ 일대일로를 통하여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¹¹⁰⁾ 또한, 일대일로의 국가 간 협력분야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간 협력을 글로벌가치사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중국이 제시한 ‘중국 제조 2025’와도 그 맥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외경제 협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한·중 협력기금 조성(공동개발, 위험분담 원칙), 전문화되고 간편한 분쟁해결메커니즘 구축, 일대일로와 연계되는 4대 자유무역시험구와 산동반도남색경제구 내지 한중FTA 경제협력챕터 활용 방안 수립 등이 그 과제가 될 것이다.¹¹¹⁾

아래의 [표 11]은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한·중 양국의 정책 및 한중FTA를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109) “十三五” 规划, Baidu.com(<http://baike.baidu.com> 2015. 10. 26. 최종 검색)

110) 이슬, ‘중국의 대외무역협정 추진방향 및 한중FTA 기대효과’,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보털- DB정보, 2015. 3. 18.

(<http://www.globalwindow.org> 2015. 10. 26. 최종 검색)

111)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74면.

[표 11]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¹¹²⁾

특례 분야	세부내용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지역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특례를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의 경우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20%에서 30% 까지 확대(법무부, 『체류관리 지침』 개정, ‘15.6월 - 일반근로자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의 경우 신규고용한 내국인 수 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허용(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15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특구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산술적 비례에 따른 국내고용률 확보 방식으로 인력 운용 상 한계가 있음 - 기본계획에 접경지역 설정을 포함하여 출입국관리제도와 고용제한제도에 대한 규제특례를 시범운용 - 새만금 지역 내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한 조기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환경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대폭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개발사업에서 기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을 감축하는 것은 투자실무에 일정한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장기적인 국익차원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내지 제

112) [표 11]의 내용은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의 정책적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7. 1.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3079> 2015.10.30.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76-78면의 표와 양병찬, ‘새만금 규제특례의 검토 및 적용방안’, 『한중산업단지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지원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31-32면의 표를 인용·보완한 것임.

제 1 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특례 분야	세부내용	평가 및 개선방안
		<p>36조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정들과의 정합성 확보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 제시를 통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p>
입지 규제	<p>○ 국내기업도 외투기업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허용** * (예) 납품액 기준 전체 매출액 30% 이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간 협력관계 유지시 임대기간 자동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협력시 입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자의 새만금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입주 편의 제공 유형에 있어서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 및 중한산업단지와 금융특구에 설립된 국내기업 및 외자기업과 그외 국내기업 간 협력에도 다양하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 - 다양한 입지편의 제공 방식 개발을 통하여 새만금지역을 창조경제플랫폼으로 적극활용
개발 규제	<p>○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 ‘15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매수취득가에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조기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토지소유권 취득 방식에 토지공개념 여부를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지

제 4 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특례 분야	세부내용	평가 및 개선방안
		<p>사용권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p>
출입국 간소화	<p>○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 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 발급(법무부, 『체류관리지침』 개정, ‘15.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특구’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자연인이동 및 출입국관리와 관련있는 국제기구(IOM 내지 UNHCR) 및 관련단체 유치를 구상해 볼 수 있음. - 실크로드/새만금 테마관광, 창조경제플랫폼 등의 구축을 위한 출입국관리 협력이 필요
통관	<p>○ 새만금 지역 내 통관 One-Stop 처리 시스템 마련(관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관 편의성 제고* * 보세창고·보세공장 등 보세가 인정되는 시설·구역을 광범위하게 인정 - 중소 수출기업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취득을 지원*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기업) 취득시 통관간소화 혜택이 가능하나, 복잡한 취득절차로 인해 공인 수처리기업(154개) 중 중소 수출기업은 56개에 불과 **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을 사후 관리체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최근 온라인금융과 해외직구 규범화를 통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113) 새만금지역에서도 최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OneStop 통관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 5通 중 ‘무역 편리화’에서 AEO 상호인증, SPS·TBT 표준화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매우 현실적인 방안 - 국경간전자상거래에 필요한 EDI정보교환·목록신고정보

제 1 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특례 분야	세부내용	평가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기업 실무자의 역량 지원을 위해 ‘세관 FTA 아카데미 운영’ 운영 - 전자상거래는 전용플랫폼을 구축(‘15.9월)하여 간이통관 지원 - ‘한중 FTA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무료보급(‘15.12월) 	<p>작성·X-ray검사 등 협력, 결제시스템(핀테크 활용방안) 구축, 열차페리를 활용한 물류·택배 시스템 개발, 페리 화물차운송 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체계 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행방안 확보, TBT·SPS의 WTO-Plus 수준 협상 필요</p>
시험·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한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산업부, ‘1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별로 지역별 국내네트워크화를 통한 일관된 대 중국 경제 협력 추진이 필요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에서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 -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1천만 불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5.9월) -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새만금내 상점에서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 및 결제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수준의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화 조치와 시범사업이 필요함 - 중국 내 자유무역시험구 및 중한산업단지, 금융특구와의 무역 및 투자 시 금융 편리화 조치 및 자유화 수준 제고 - AIIB 활용 및 실크로드기금 참여 통로 확대와 실물경제 기반 위안화역외플랫폼 구축 - 새만금개발 연계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 및 자국통화 직접

특례 분야	세부내용	평가 및 개선방안
		투자 가능한 사모펀드 개발 - 신용보증시스템 구축, 정부신용보증협력
기타	한중산업단지 전담 분쟁해결 기관 설치	- (새만금) 한·중 협력기금 조성 : 공동개발과 위험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립 -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 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철저한 법률리스크 점검이 필요 -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에 대하여서는 제20장 분쟁해결 적용이 제외되므로 별도의 분쟁해결기관이 필요

제 2 절 관 리 및 운 영

한중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한산업단지와 상호호혜적인 정책 수립 및 관련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관리주체와 개발주체의 분리,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13) 김명아 외,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158-160면; ‘꺼져가는 중국 성장 불꽃, 해외직구가 살린다’, 뉴스핌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616000440> 2015년 10월 26일 최종 검색)

1. 관리 및 운영 체계

중국-싱가포르 협력을 통하여 조성된 쑤저우공업원구의 경우 협의 채널과 연합협력이사회, 양자간 업무위원회,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¹¹⁴⁾ 이러한 관리체계는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공동 개발 및 추진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차관급협의체, 한중산업단지 연합이사회, 한중산업단지 실무협의체, 한중산업단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표 12] 쑤저우공업원구 운영체계의 한중산단에 대한 시사점 115)

	싱가포르 측	중국(쑤저우) 측	시사점
협의채널	부총리(张志贤)	부총리(张高丽)	
중-싱 연합협력 이사회	내정부, 무역공업부, 총리실, 교육부, 국가발전부, 재정부, 교통부, 외교부, 문화사회청년부, 환경수자원부	상무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질량감독 검사검역국,	- 각 협의체 조직을 분화함으로써 효율성 및 관리 기능 극대화 -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분쟁해결 전문 기관 설립 필요

114) 苏州工业园区 홈페이지 - [园区概况] - [中新联合协调理事会机构(2013)]

(http://www.sipac.gov.cn/zjyq/zxhz/201403/t20140319_262392.htm 2015. 10. 30. 검색)

115)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홈페이지 - 개황 - 중·싱협력 - 중·싱 양국 정부 간 협력 대표프로젝트 - 중싱 연합협력이사회 기구(2013) 내용 정리

(http://www.sipac.gov.cn/zjyq/zxhz/201403/t20140319_262392.htm 2015. 10. 26. 최종 검색)

	싱가포르 측	중국(쑤저우) 측	시사점
		강소성인민정부, 쑤저우시인민정부	
양자간 업무위원회	무역공업부	쑤저우시인민정부	
자문기구	무역공업부 SW프로젝트 관공실	쑤저우공업원구 싱가폴경험자문 관공실	

2. 관리주체와 개발주체의 분리와 기금 운영

추진 조직은 행정과 개발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향후 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새만금사업추진단과 새만금개발청 등이 위에서 제안한 관리체계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가칭 한중산업단지공동개발공사)은 별도로 설립하고 추진력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개발주체는 공동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하면서, 산업부, 새만금사업추진단 및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개발 업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중국의 쑤저우공업원구 사례에서도 관리주체(SIP)와 개발주체(CSSI)는 분리되어 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매립 시행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 할 것이다. 정부 관련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가칭 한중산단개발조성기금을 설립하고 그 조달 자금으로 산업단지 부지 개발 및 인프라확보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민간자금조달으로는 한중산업단지공동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중국컨소시엄과 한국컨소시엄이 지분비율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중산업단지를 ‘위안화 특구’로 지정하여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대중국 거래를 원화와 위안화 중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중 양국의 기관과 기업 및 금융기관이 위안화채권을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한다면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중국 컨소시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효성있는 투자유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쑤저우공업원구 관리/개발주체의 한중산단에 대한 시사점¹¹⁶⁾

		소주공업원구관리위원회 (SIPAC)	중국-싱가포르 개발유한회사 (CSSD)	시사점
지위 및 권한		행정관리 주체	산업원구 개발 주체	민관협력형 새만금 한중산단 개발공사 설립 필요
조직 구성		정부 파견 조직	중-싱 합자회사 형태	
기능	계획	마스터플랜 작성/프로젝트 관리	마스터플랜에 참여	
	건설	기초시설에 자금투입	토지 및 부동산 개발	
	투자 유치	현재 전담 부서 설치	현재 투자유치 수수료 수익	

116) 강태원,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소고: 소주공업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차이나연구』 2015. 18(2),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138면의 표를 수정·보완하였음.

		소주공업원구관리위원회 (SIPAC)	중국-싱가포르 개발유한회사 (CSSD)	시사점
입주 기업 관련 업무	투자	투자가이드, 컨설팅, 전문성 확보를 통한 권한 부여	투자유치 설명회	한중산단 개발조성 기금/ 한중산단 운영기금 ¹¹⁷⁾ / 민관협력기금 등 설치 필요
	등록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등록절차 간소화, 애로사항 접수	기업 업무처리 지원	
	부지	부지 관련 애로사항 해결	공업부지 매도, 공장 설립 지원	
	운영	상업, 물류, 은행, 기타 서비스, 신속통관, 정주환경 조성, 학교 설립 및 인재 육성, 정기적 기업방문을 통한 컨설팅	공공사업서비스, 부동산관리, 주택분양, 교육기회 제공 등	

제 3 절 관련 정책 지원

1.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범위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를 새만금 글로벌경협단지와 유사한 범위로 추가 선정하여 산업협력지구/관광·서비스특화지구/친환경생명지구/주거형스마트지구 형태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경우 주위에 군산산업단지가 있으므로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로 조성하여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117) 중국 쑤저우공업원구의 경우에는 쑤저우공업원구 공적기금 관리센터(苏州工业园区公积金管理中心; SIP Provident Fund Management Center)를 설립하여 쑤저우공업원구 공적기금을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양육보험, 실업보험 및 주거보장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http://www.sipspf.org.cn/publish/main/24/index.html> 2015. 10. 26. 최종 검색).

생각되며, 유통·통관, 관광·서비스 산업 특화를 통한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배후로 한 농생명과학단지 개발, 신선식품의 유통·통관 특화, 관광·레저 등과 결합한 융복합 체험형 6차산업 개발도 가능하다.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단지개발에 있어 연구개발, 생산, 주거, 여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치를 통한 기술집적을 시도하였으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대학, R&D센터, 관광레저단지, 물류센터, 산업단지).¹¹⁸⁾ 따라서,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조기정착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서는 연구개발·생산·주거·교육·환경·관광·레저·물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출입국관리제도 지원

장기적으로 ‘무규제’ 지역을 현실화하기 위하여서는 접경지역 설정을 통한 <새만금 한중산단-한국 내륙> 간 출입경관리를 시행하여야만 한다. 출입국 규제특례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를 비롯한 새만금 내에서의 무규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새만금과 내륙 간 인공적·자연적 접경지역을 설치하여 새만금에 입경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새만금에서 내륙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출입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새만금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통행증 지참을 통한 신속

118)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新竹科學工業園區) 홈페이지 - [我們的服務] 및 [e化及便民服務] (<http://www.sipa.gov.tw/home.jsp?key=type21&serno=201001210014&mserno=201001210014&menudata=ChineseMenu&contlink=content/services.jsp> 2015. 10. 30. 검색); [해외성공사례] 대만 신주과학공업원구, 과플러사이언스 2005. 5. 9. 기사 (<http://popsci.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UID=1001795> 2015. 10. 30. 검색) 참조

통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홍콩-심천의 출입경관리 시스템과 유사하게 도로와 전철 등 자연인의 이동이 가능한 곳에 출입경심사대를 설치하여 출입국 및 출입경 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의 경우에도 신속심사가 가능하고, 심천-홍콩 간 전자출입경 업무가 가능하다.

이러한 출입경관리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북경협을 통하여 일정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국내의 경험에 비추어 심천-홍콩의 출입경관리 정책 및 실무 사례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관리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중산업단지 전담 분쟁해결기관 설치

새만금 한중산단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FTA 제17.3조는 경제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0장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한중산단 개발 및 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전문 분쟁해결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제17장 경제협력
제17.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제20장(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표 14]은 중국-대만 양안간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공동 개발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별도의 분쟁해결 제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표 14] 중국-대만 투자보장협정의 분쟁해결제도 사례를 통해 본
한중산업단지에 대한 시사점¹¹⁹⁾

구 성	규 정	내 용	시사점
제15조	투자자 간 분쟁 해결	투자자간 분쟁해결은 계약 시에 그 해결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제16조	ISDS (국가 - 투자자 간 분쟁 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발생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우호적 해결 2. 투자소재지 또는 그 상급기관의 조정 3.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투자업무팀의 조정 4. 전문 양안투자분쟁해결기관의 조정 (반기별로 분쟁처리상황을 양안경제협력위원회 투자업무팀(兩岸經濟合作委員會 投資工作小組)에 보고) 5. 투자소재지 행정심판 또는 사법절차에 따른 해결(동협정 발효 전 사법절차가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서는 1.~4.의 조정 절차 적용 제외) 	<p>새만금 한중산업단지 내 투자자간 분쟁해결 전담기관 운영</p> <p>새만금 한중산업단지 내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 및 중국측 중한산업단지 내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와 상대국 간의 분쟁에 대한 전문 분쟁조정 기관이 필요</p>

119) 2012년 8월 10일 중국-대만 간 체결된 『양안 투자보호촉진협정(海峡两岸投资保护和促进协议)』 제15조와 제16조의 내용을 번역하고
(http://tga.mofcom.gov.cn/article/zt_ecfa/subjectii/201306/20130600171245.shtml 2015. 10. 30. 최종 검색), 한중산업단지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한 표임.

4. 유통채널 확보 및 물류 원활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

한중산업단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인증·검역 표준화, Cold Chain 구축, 원스탑 통관, 창구단일화,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건설, 해외전자결재시범사업 수행 등을 통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 통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한-중 양국에 있는 소비자가 상대국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상운송을 활용한 간이신고절차와 간소화된 검역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하는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산항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시험결과 상호 인정 및 상호 시험인증기구 설치 등을 통한 통관검역시스템 간소화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한중산업단지와 중한산업단지 간에는 항만 연결 및 육로 연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해외 직구/역직구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그 역할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자유무역시험구와 연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중국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5]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및 한중FTA를 활용하여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표 15] 일대일로 5通과 한중FTA/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통한
한중산업단지 협력 방안]120)

5通	구체적 방안	한-중 FTA/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중산업단지 협력 방안
정책 협력 (政策沟通)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법률적 차원에서의 협력기제 마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한 정책적·법률적 차원의 협력기제 확보	한-중 산업단지 및 중-한 산업단지 운영상의 협력
교통인프라 구축 (道路联通)	중국과 각국을 연결하는 교통·해운·항만·에너지 인프라 구축	교통(TCR, TSR)·해운(열차페리)·항만(렌윈강) 연결 협력 ¹²¹⁾	한중산업단지-중한 산업단지 항공·항로 연결 및 노선개발
무역 편리화 (贸易畅通)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제전자상거래 활성화, 서비스 무역 활성화, 검역/인증·표준 협력	OneStop 통관 및 TBT 추가이행협정 체결, 전자상거래, 신흥산업 협력 강화	OneStop 통관, AEO 상호인증, 서비스 무역 거래 활성화, 해외직구편리화, 검역/인증·표준 협력, 해외 직구/역직구 플랫폼 조성
금융 협력 (货币流通)	실물경제기반 금융·통화 협력, 통화스왑 규모 및 결제 범위 확대,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 해외기업의 중국내 채권발행	금융서비스분야 협력과 금융특구 조성을 통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후속협상의 개방폭 확대	위안화무역결제 및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위안화직접투자 등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

120)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73-74면의 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121) ‘항공사 수장이 한·중 해저터널 만들자는 까닭’, 중앙일보 뉴스 기사, 2015년 1월

제 4 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5通	구체적 방안	한-중 FTA/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중산업단지 협력 방안
민간 교류 (民心相通)	유학생 지원, 관광 협력, 실크로드관 광상품개발, 출입 국간소화	자연인이동, 관광협 력, 경제협력 분야 강화	출입국규제 완화, 의료·교육 개방 조 치, 주변 자연경관 을 활용한 관광상 품 개발

그리고, 중국 광둥성 정부가 마련한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실시방안(中国(广东) 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2015년 7월 20일)의 경우에는 8대 분야 62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여 무역 원활화 및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바, 이는 한중산업단지와 중한산업단지 간의 협력에도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아래의 [표 16] 는 동 실시방안에 따라 중국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 수행될 구체적인 개방 정책 및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16] 중국 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정책¹²²⁾

협력 및 개방 분야	정책 조치 내용
투자·무역 편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 단일창구화를 통하여 세관·검역·외환·출입국·해사 등 관리부문의 종합관리플랫폼 구축 · 원산지 인증 및 관리 방식의 개혁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리기준 모색

17일자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954877&cloc=olink|article|default 2015. 10. 26. 최종 검색)

122) 『中国(广东) 自由贸易试验区建设实施方案』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표임. 출처는 中国(广东) 自由贸易试验区 홈페이지 - [政务公开] - [通知公告] (http://www.china-gdftz.gov.cn/zwgk/tzgg/201507/t20150721_1122.html#zhuyao 2015. 10. 26. 검색).

협력 및 개방 분야	정책 조치 내용
국제기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준의 투자무역 규칙 연구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국가간 협력 시도 · 국제상사 중재 발전과 지식재산권보호, 국제 인재풀 구축
법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행정심사 및 상사등기제도 개혁과 신용기제 확립 · 외국인투자 국가 안전심사 및 사업자집중 반독점 심사의 실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 완비와 자유무역시험구 조례 입법 작업을 통한 입법적 보장의 강화
행정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사제도 및 상사등기제도의 개혁, 인터넷행정 서비스 방식 등을 통한 행정 규범화 · 스마트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 사회신용 시스템의 통일, 종합적 법 이행체계 개혁 시범사업
개방플랫폼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관련 국가(지역)와의 물류체계 개선 등 수준 높은 개방플랫폼 건설 ·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세관·검역·인증·표준·통계 정보 등에 대한 협력 시범업무 개시 · 일대일로 물류허브 구축 국경 간 금융서비스 강화
시범구 조성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시범구로 조성을 통한 신형 산업 및 서비스업에 발전 도모
국제거래기능	금융·전자상거래 등 국제거래 기능 집결
항공·항운 발전	항공·항운의 국제 서비스 기능 제고
위안화 국제화	새로운 외환관리제 도입 및 위안화국제화 시범구 운영을 통한 금융개혁
세관 및 조세 개선	세관 감독 시스템 개혁 및 조세 정책 개선

중국의 푸젠자유무역시험구 푸저우지구 관리위원회가 2015년 5월 14일 발표한『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 대한 정책 조치와

관련한 정책 해설』(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政策措施解读(一))에서는 40개 항목에 달하는 조문해석을 통하여 푸젠자유무역시험구가 대만과 협력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개혁중점업무와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동향은 향후 푸젠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푸젠-대만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향후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챕터에 근거한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아래 [표 17]은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 대한 정책 조치와 관련한 정책 해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 중국 푸젠자유무역시험구의 푸젠-대만 간 시범조치 내용¹²³⁾

협력 및 개방 분야	정책 조치 내용
행정·통관 절차 간소화	단일창구 수리 업무방식을 통하여 상무·공상·세무·품질검사 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1장의 신청서에 모두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관공서 현장 신고등록 방식을 통하여 처리
플랫폼 구축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보세 전시·거래 플랫폼 구축 및 상품상태분류 관리방식 도입
개방조치 시범사업	외국인투자 상업보험 시범업무, 외국인투자 물용업 시범업무,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업무, 국제선박관리 관련 개방조치
국제무역 편리화	국제무역에서의 전자통관 및 단일창구화, CEPA 및 ECFA 상품무역 원산지증명 간소화, 동식물 및 그 상품검역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적용, 종자산업에 대한 제한 완화

123) 『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政策措施解读(一)』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표임.
출처는 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 홈페이지 - [首页] - [政策解读]
(<http://www.china-fjftz.gov.cn/article/index/aid/721.html> 2015. 10. 26. 최종 검색)

협력 및 개방 분야		정책 조치 내용
검역절차 및 식의약품 심사 간소화		농수산물·식품·화분묘목에 대한 검역절차 간소화, 대만산 보건식품·화장품·의료기기·약재 심사 절차에서의 우대혜택
규제 완화		대만인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개인자영업(个体工商户) 등록 허가, 여행업·건설업 규제 완화, 전문직 취업 규제완화
전자상거래 협력		양안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자유무역시험구 내 합자·독자기업 설립과 데이터처리 및 교역처리업무 허용
출입경 및 운송 편리화		자유무역시험구와 대만 간 출입경 정책 편리화와 자동차 통행 및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수속 간소화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해외계좌관리방식 완비 및 자유무역시험구 내 자본항목 자유태환, 외환자금결제, 다국적기업의 외환자금집중 운영관리방식 지원, 자유무역시험구 내 법인 금융기구와 기업의 해외 위안화채권 발행 규제 완화, 기업 및 개인의 국경간 거래·투자에 대한 위안화 결제 업무 추진, 자유무역시험구 내 중국자본 은행의 외환 시범업무
지식재산권 활용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 및 보험, 고위험투자, 신탁 등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업무의 개혁 및 지식재산권 자산 유동화처리시스템 구축
금융리스		자유무역시험구 내 금융리스 업무 범위 및 방식 구축과 절차 간소화
금융업 진입 완화	은행	자유무역시험구 내 대륙계 상업은행의 경외 자산관리 대리업무 허용, 대만계 은행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위안화 대출 허용
	보험	대만계 보험회사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경영기구 설립 허용
	금융 투자	대만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허용

중국 4대 자유무역시험구 중 푸젠자유무역시험구는 양안관계(중국 대륙정부와 대만정부)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므로 이와 같은 파격적인 개방정책이 시범업무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한-중 경제협력에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도 일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한중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푸저우지구 관리위원회가 취한 정책 사례와 같이 <한중산업단지(새만금) - 중한산업단지(엔타이,엔청,광둥 등)> 간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개방정책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4 절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 개발

1. 개방수준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범사업의 필요성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서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다른 경제특구 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새만금이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표 18]은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들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표 18] 상하이·싱가포르·두바이의 규제완화 정책 비교¹²⁴⁾

구 분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싱가포르	두바이
설립시기	1990	1965	1985
면 적(km ²)	533	710	48
인 구(명)	270만	484만	
운 영	지방정부	국가	국가
전담기관	푸동관리위원회	경제개발청	자유무역지대관리청
개발목표 및 특징	중국 최초 종합개혁구로서 최근 국제금융허브로 도약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산업물류허브
유치목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위주로 전환	금융, 서비스업 중심	관광 및 물류 중심
입주조건	국내외기업 무차별	국내외 기업 무차별	국내외 기업 무차별
법인세율	25%(하이테크 15%)	17%	0%
소득세율	최고소득세율 45%	최고소득세율 20%(0-20%)	0%
조세감면	법인세 초기 2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사안에 따라 탄력적 결정(최장 15년 면제)	관세, 법인세 없음
현금지원	별도규정 없음	EDB 자체지침에 따라 탄력적 제공	건축비, 초기 운영비 지원가능
노 사	정부개입 적극적, 노조단체 행동권 없음. 정리해고 조건 엄격	노사분규 원칙적 불법,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조건 유연	노동관련 규제 없음

124)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fez.go.kr/kr/major-foreign-zone-status.jsp>, 2015. 10. 26. 방문)의 표 부분 인용.

제 4 장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 분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싱가포르	두바이
인 력	풍부한 인력	노사분규 원칙적 불법, 무노동무임금, 정리해고 조건 유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자유
외국 교육기관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외국인 병원	외국병원 설립허용	외국인 진료소 운영	외국병원 설립허용
금 융	금융서비스업 개방 위안화 자유태환 허용 역외금융 기능 부여	외환 규제 없음	외환 규제 없음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각적으로 채택하는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라북도가 가진 다양한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산업단지가 인접한 새만금 북쪽 지역의 경우 군산제2산업단지 및 군산항, 익산국가식품클러스트가 이미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 성공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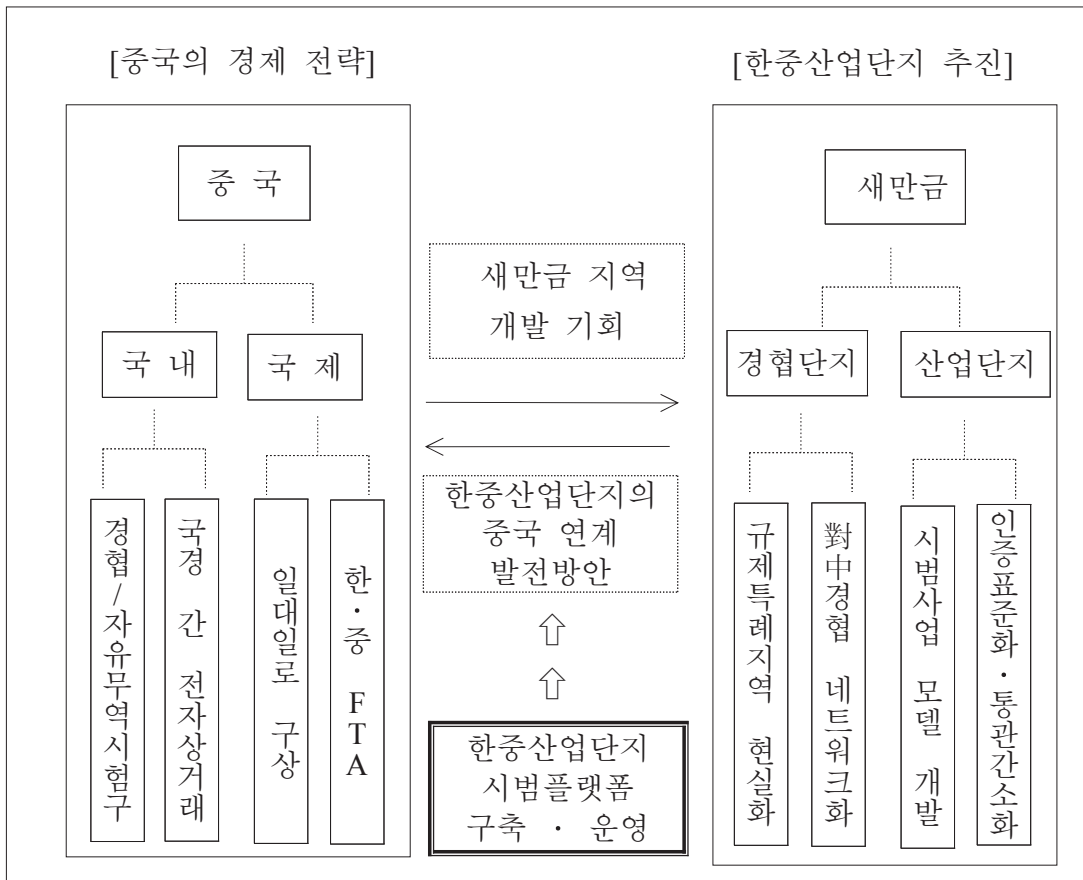
시범사업 모델 개발의 전제로 해외 직구/역직구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양국 간 전자세관을 적극 활용하고 통관기간 단축하는 한편 항만 지역 내 운송 및 유통의 편리를 위한 항만 및 창고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상의 지원을 위하여서는 한중산업단지와 중한산업단지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상품 무역의 경우 원화·위안화 결제 자유화 및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결제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 분석을 통하여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를 위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한-중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편 산학연 R&D 센터를 조성하여 한-중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중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한중공동개발을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양국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인큐베이팅 기능을 확대하고, 상호 합작투자기업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7]은 중국의 정책현황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연계한 한중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7] 중국의 정책현황과 새만금한중산업단지 추진 방안



2. 식품·바이오 산업 물류기지 조성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중점 투자유치 업종에는 물류·유통업과 함께 고부가 식품 분야가 제시되어 있다.¹²⁵⁾ 식품·바이오 산업이나 물류·유통업은 ‘한중산업단지 시범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One-Stop 통관, TBT·SPS 인증 협력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교우위 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창고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Cold Chain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를 신선식품 물류기지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물류기지로 기능할 수 있다. 신선식품의 중국 진출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도록 익산식품클러스터와의 산업 가치사슬 연계를 통하여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한 Cold Chain을 육성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⁶⁾

향후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품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FTA 를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농수산물 수출산업화 전략, 품질인증 지원, 수출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원산지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다.¹²⁷⁾

12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5면.

126) 김형근, “SWOT 분석을 통한 중국의 신선물류 현황과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5. 5., 183-185면; 김형근, “중국 신선물류 현황과 시사점”, 『한중 Zine InChinaBrief』Vol.297, 인천발전연구원, 2015. 8. 17., 7면 등 참조.

127) 우리나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5년 2월 26일의 보도자료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는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FTA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시 도약을 중심으로 한 신속통관 및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친환경·웰빙 등의 한국 식품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화·드라마 등) 활용¹²⁸⁾으로 레시피 및 가공기술 개발 등 식품과 관련된 일련의 가치사슬을 콘텐츠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 수행을 위하여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에서의 문화·콘텐츠 연계를 통하여 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레시피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실질적인 소비 유인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주변지역 및 새만금 농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식품산업을 활용한 6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도 부합하므로 향후 한중FTA를 활용한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 수행과 함께 중국의 제품인증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협력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한중산업단지 관광·서비스 특화지구 조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산업단지의 지역적 범위를 새만금 사업 지역 내지 새만금 글로벌경협단지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새만금 인접지역 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6차산업 개발 및 육성이 가능

128) 중국 온라인 소비자들의 특징 및 미디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지형 외, 『중국 온라인 시장을 통한 제주산 가공식품의 중국 진출 가능성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2. 12., 29-34면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음.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중산업단지에서 산업협력지구와 관광·레저지구를 연계한 복합서비스지구 개발을 통하여 MICE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광·레저 용지 개발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개발 사례와 같이 해외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로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 [표 18]은 싱가포르의 개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9]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개발 사례¹²⁹⁾

	리조트월드 센토사	마리나 베이 샌즈
자 본	젠팅 그룹(중국계)	샌즈 그룹(미국계)
위 치	센토사섬	비이프런트
특 성	휴양형(가족 단위)	도심형(MICE 위주)
규 모	47.0만m ²	12.2만m ²
주요시설	카지노,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해변, 해양공원 등	카지노, 호텔, 클럽, 식당가, 쇼핑몰, 수영장, 회의장 등

또한, 새만금 산업/물류 지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과 <기반시설조성>을 전제로 한 “기업 및 투자자 유치”가 필요하지만, 복합서비스지구 개발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구상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반시설조성-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서비스지구(복합리조트 등) 개발자에 대한 권한 부여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복합리조트 개발과정에서 두바이 정부의 두바이 팜 아일랜드(2006년부터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거대한 인공섬)의 개발 경

129) 한재진, 『새만금 한중 FTA 산단활성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전북발전연구원, 2015. 8. 25., 21면의 표를 인용.

험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⁰⁾ 따라서, 당시 개발에 참여한 두바이 정부 및 관련 시행업자 등에 대하여 매립 및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을 통하여 <공유수면매립-기반시설조성-기업유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발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130) 한재진, 앞의 글, 21면 참조.

제 5 장 결 론

현재 한중FTA 협정문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의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지정 및 협력 관련 규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한중/중한산업단지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한중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개발에서의 다양한 조직 및 권한, 이행체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이 가진 입지조건을 최대한화 할 수 있도록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중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용과 관련된 중국의 관련 정책을 파악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중한산업단지 협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를 다층화하여 양국간 협의를 상시화하고, 이러한 관리주체는 개발주체와 분리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한중산업단지 개발기금과 다양한 민관협력기금을 설치해야만 자금조달도 원활해 질 수 있다.

또한, 한중산업단지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생산/물류/연구/관광레저/주거 환경을 모두 갖춘 종합산업단지로 추진하여야 기존의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한중FTA 분쟁해결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전담 분쟁해결기관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는 한중산업단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인증·검역 표준화, Cold Chain 구축, 원스탑 통관, 창구단일화,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건설, 해외전자결제 수행 등에 필요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이 있을 것이다.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서는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물류·유통업, 고부가식품산업, 관광·레저 등에 대한 성공모델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향후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추진에 일정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문에서 제시된 각 사안에 대하여서는 후속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논문 및 보고서

- 양병찬, “새만금 규제특례의 검토 및 적용방안”, 『한중산업단지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지원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5. 9. 21.
- 김정진, “새만금한중FTA산업단지의 국내/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과의 정합성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5. 9. 21.
- 박찬욱,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8.
-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한중관계연구』 제1권2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2015. 8.
- 강태원,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소고: 소주공업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차이나연구』 2015. 18(2),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5. 8.
- 김형근, “중국 신선물류 현황과 시사점”, 『한중Zine InChinaBrief』 Vol.297, 인천발전연구원, 2015. 8. 17.
- 김형근, “SWOT 분석을 통한 중국의 신선물류 현황과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제13권 제1호, 2015. 5.
- 정진우,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 밑그림 ‘중국제조 2025’ 발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442호, KOTRA, 2015. 5. 22. (http://tradedoctor.kotra.or.kr/bp/cn/gw/BPCNGW021M.html?BBS_ID=10&ARTICLE_SE=20302&ARTICLE_ID=5028807&MENU_CD=M00001&UPPER_MENU_CD=M00002&MENU_CD2=M00006 2015.10.30. 검색)

참 고 문 헌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4대 자유무역구”,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8 No.6, 2015. 4. 23.
- 김성애, ‘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발효’,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DB정보, 2015. 3. 24.
- 이 술, ‘중국의 대외무역협정 추진방향 및 한중FTA 기대효과’,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DB정보, 2015. 3. 18.
- 乔慧娟, “论我国境外经贸合作区的风险防范问题 —以赞比亚中国经贸合
作区为视角”, 商业时代, 2014. 8. 6.
- 박영철, “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2집
제2호, 2012. 8.
- 박찬욱,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5. 8.
- 한재진, 『새만금 한중 FTA 산단활성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현대
경제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전북발전연구원, 2015. 8. 25.
- 『한국산업단지총람 -1075개 전국 산업단지 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 김명아 외,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
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법제
연구원, 2014. 12.
- 정지형 외, 『중국 온라인 시장을 통한 제주산 가공식품의 중국 진출
가능성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2. 12.
- 신기동 외,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해외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2009.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중국-싱가폴 합작 쑤저우공업단지의 개발 과정 및 관련 법제 소개』. 2013. 10. 15.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report/31677?astSeq=56>
2015. 10. 30. 검색))

- 보도자료 및 정부문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개발 도약의 기틀 마련”’,
보도자료, 2015. 9. 2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개발 가속화-유치업종
배치 제한 폐지 등 기업수요 탄력적 대응”, 새만금개발청 보
도자료, 2015. 9. 11.

산업통상자원부, 『비관세장벽 해결로 한중FTA 활용 극대화 추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9. 2.

새만금개발청, 『제7차 무투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5. 9.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인 투자·고용 쉬워진다”, 법무부/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2015. 7. 1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제17호)-제15년 6월’, 2015. 6. 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2015. 3. 19.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산업
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2.

기획재정부, “『제15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KDI, 2014. 9. 5.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

참 고 문 헌

고시 제2010-269호)』

([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notify/bbs/bbsView.do?bbs_seq_n=58386 &bbs_cd_n=5](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notify/bbs/bbsView.do?bbs_seq_n=58386&bbs_cd_n=5) 2015. 10. 30. 검색)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 협의의견』, 2010. 5. 30.

- 기 사

이데일리, “‘새만금’ 한중FTA 유일 산단 선정, 투자 유치 및 개발 가속화”, 2015. 7. 25.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21&newsid=01088966609438128&DCD=A00402&OutLnkChk=Y> 2015. 10. 30. 검색).

조용성, [특파원스페셜]중국 지방도시, 한중산업단지 조성 붐... 전국에 이미 9곳', 아주경제, 2015. 7. 20. 기사, (<http://kr.ajunews.com/view/20150720103913874> 2015. 10. 30. 검색).

연합뉴스 2013. 3. 7. 기사(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 - [오늘의 시사 금융용어] - [中해외경제무역합작구]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44> 2015. 10. 30. 최종 검색))

충효예신문, “한중미래도시개발(주) 청산 , 무안기업도시 22일 개발 구역 지정 해제”, 2013. 3. 11. 기사 (www.chysm.net/nm/atc/view.asp?ik=355 2015. 10. 30. 최종 검색)

연합뉴스,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70개 합작구 설립”, 2015. 7. 14.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090700097.HTML?input=1179m> 2015. 10. 30. 최종 검색)

美投资协定正式开启负面清单谈判’, 新华网 > 财经 > 正文 기사,
2015. 6. 19. 기사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6/19/c_127931699.htm 2015. 12. 16. 검색)

中国经济网－《经济日报》, ‘《中国2049战略》发布：中国经济发展呈现新趋势’, 2015. 6. 4. 기사(http://views.ce.cn/view/ent/201506/04/t20150604_5546498.shtml)).

威海网·威海日报, ‘威海出台加快推动中韩自贸区合作首批实施方案’,
2015. 3. 17. 인터넷신문기사(http://www.whnews.cn/news/node/2015-03/17/content_6323832.htm 2015. 10. 26. 최종 검색).

-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산업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ز.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중국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http://www.gov.cn>)

중국 국무원(国务院) 홈페이지(<http://www.gov.cn>)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홈페이지
(<http://www.sdpc.gov.cn>)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

참 고 문 헌

중국 쑤저우공업원구 홈페이지(www.sipac.gov.cn)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산업원구 홈페이지(www.qip.gov.cn)

중국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gdftz.gov.cn>)

중국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www.china-fjftz.gov.cn)

중국 웨이하이시 정부 홈페이지(<http://zfxgk.weihai.gov.cn>)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新竹科學工業園區) 홈페이지
(<http://www.sipa.gov.tw>)